

중국 환경 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중국 환경 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2017. 10.

kotra

<목 차>

I. 최근 중국 환경단속 강화 동향	1
1. 환경단속 강화 배경 및 동향	1
2. 중앙정부 차원	7
가. 중앙 감찰 현황	7
나. 위반상황 단속 현황	8
3. 지방정부 차원	10
가. 징진지 28개 도시 대기오염 예방관리	10
나. ‘산란오’기업 특별단속	14
다. 베이징 지역 자체단속	18
라. 기타 지역 자체단속	21
 II. 중국 환경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제강화 동향	 23
1. 법률체계 및 관리감독체계	23
가. 법률체계	23
나. 관리감독체계	24
2. 주요법규	26
가. 환경보호법	26
나. 환경영향평가법	27
다. 환경보호세법	29
라. 대기오염방지법	30
마. 물오염방지법	32
3. 주요 정책조치	33
가. 5개년 계획	33
나.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제도	34
다. 대기오염방지분야	36
라. 물오염방지분야	39
마. 토양오염방지분야	43
4. 최근 환경법 정비동향	45
가. 배출허가증제도 관련 규정 집중 발표	45
나. 환경영향평가법집행 중요성 부각	45
다. VOCs 배출억제 조치 발표	46
라. 수직관리제도 도입	47
 III. 환경감독처별 주요 사례 및 시사점	 48
1. 중점관리감독업종	48
2. 환경단속 처벌 사례	51
3. 잘한 사례와 잘못된 사례	55
4. 환경규제관련 FAQ	59
5. 전망 및 대응방안	64
(부록) 1. 2017년 10월~2018년 3월 ‘2+26’도시 공기질량 개선 목표	67
2. 환경규제 대응 체크리스트	68
3. 환경단속 사례	81

<요 약>

□ 중국 환경감독 강화 배경 및 동향

- (배경)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야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생태 환경보호 의식 강화 및 환경규제 필요성 대두
 - . (환경공기질량 기준) '16년 중국 338개 지급(地級) 도시 중 84개 도시가 기준에 달하며, 254개 도시는 환경공기질량 기준 초과
 - . ('16년 환경평가지수) 중국은 총 180개 국가중 106위 기록
- (정책) 시진핑 정부는 친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규제 등 투트랙화 정책으로 환경보호에 전면적으로 나섬
 - . ('12.5 계획') 7대 신흥전략산업 * 육성 계획 발표
 - * 7대 신흥전략산업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 . ('13.5 계획') 친환경부문을 국정 5대 발전이념에 포함시킴
 - . (규제 기틀 마련) 新 '환경보호법' 기점으로 '17년 양회 이후 본격 환경 감독 및 규제 강화
- (동향)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환경감독 및 규제 실시
 - . (중앙) 환경보호감찰제도를 가동하여 '16~'17년 2년 간 31개 성의 환경 상황 감독 * 에 나섬
 - * '17년 8.24일까지 환경민원건수 2만 343건, 형사처벌건 66명에 달함
 - . (지방) 징진지 28개 도시 대기오염 감찰이 대표적임
 - *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은 '17년도 특별단속 계획 수립, 1년간 징진지 지역을 감찰 토록 지시('17.4.5 대기오염방지 영상회의)
 - * '산란오' 기업 정리를 비롯하여 강도 높은 기업퇴출 등 구조조정실시

□ 중국 환경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 (현황) 新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보호세법'과 '대기/물오염방지법' 등이 환경감독 및 규제 근거가 되고 있음
- (성격) 환경기본법인 新 '환경보호법'('15.1.1일부)은 환경기본법으로 '89년에 제정된 종래법보다 처벌 수준 대폭 확대

- . (환경영향평가법) '16.7.1일부, 환경영향평가 위법부문 책임 추궁 강화
- . (환경보호세법) '18.1.1일부, 기존 오염물 배출비 제도의 법적 강제성 부족 문제 강화를 위해 신설
- . (대기오염방지법)'15.1.1일부, 초미세먼지 PM_{2.5} 배출 억제가 핵심
- . (물오염방지법) '18.1.1일부, 총량관리제도와 오염물 배출허가가 핵심

□ 환경감독처별 현황 및 주요 사례

- (현황) 역대급 환경단속이 진행되어 '생산억제' 조치까지 이어짐
 - . (중점관리업종) 전기,시멘트,철강,코크스,화공,전해알루미늄,의약/농약 등
- (처벌대상)
 - ① 환경영향서 미취득으로 인한 벌금형
 - ② 환경정보 미공개로 인한 벌금형
 - ③ 공익소송에 따른 행정소송
 - ④ 오염물 배출 기준치 초과 및 방지지설 미비
 - ⑤ 오폐수/폐기물 불법 배출 및 시설 미비
 - ⑥ 폐수처리 시스템 비정상 운영
 - ⑦ 대기오염 유발 연료 사용

□ 전망 및 대응방안

- (전망) 중국의 환경감독이 상시화되고 환경보호 규제 한층 강화 예상
 - .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환경단속 기틀 마련
 - . '16년~'17년 상반기 환경보호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수가 그 단속 강도를 가늠케 함
 - . 환경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
- (대응방안)
 - . (상시) 중국의 환경법률 및 규제내용을 수시 모니터링해서 환경 리스크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필요
 - . (사전) 환경당국의 환경단속 시행 전 자체 사전 점검 및 환경 설비 적시 구비
 - . (사후) 환경부문 지적을 받거나 적발됐을 경우 적극적인 개선 및 조치

I. 최근 중국 환경 단속 강화 동향

1. 환경감독 강화 배경 및 동향

□ (배경)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오염¹⁾ 야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생태 환경보호 의식 강화* 및 환경규제 필요성 대두

○ 지난 30여 년간 중국은 연 9.8%의 경제성장률로 G2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기오염 물질 및 도시 고형폐기물 주요 배출 국가로도 인식되고 있음

* 2016년 환경성과지수²⁾에서 중국은 총 180개국 중 106위 기록

* *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해외로 떠나는 이민자 급증 추세³⁾

○ 2016년 중국환경현황공보(中国环境状况公报)에 따르면 2016년 중국 338개 지급(地級) 이상 도시 중 84개 도시(전체의 24.9%)가 환경공기 질량 기준에 달하고 254개 도시(75.1%)는 환경공기질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전국) 지급이상도시 338곳의 PM_{2.5}농도는 47 μ g/m³로 중국 환경기준 (35 μ g/m³)을 초과, WHO기준(10 μ g/m³)보다 4.7배정도 더 심각

. 74개 주요 도시*의 PM_{2.5}농도는 50 μ g/m³로 '13년 대비 31% 감소, 그러나 WHO기준(10 μ g/m³)보다 5배정도 더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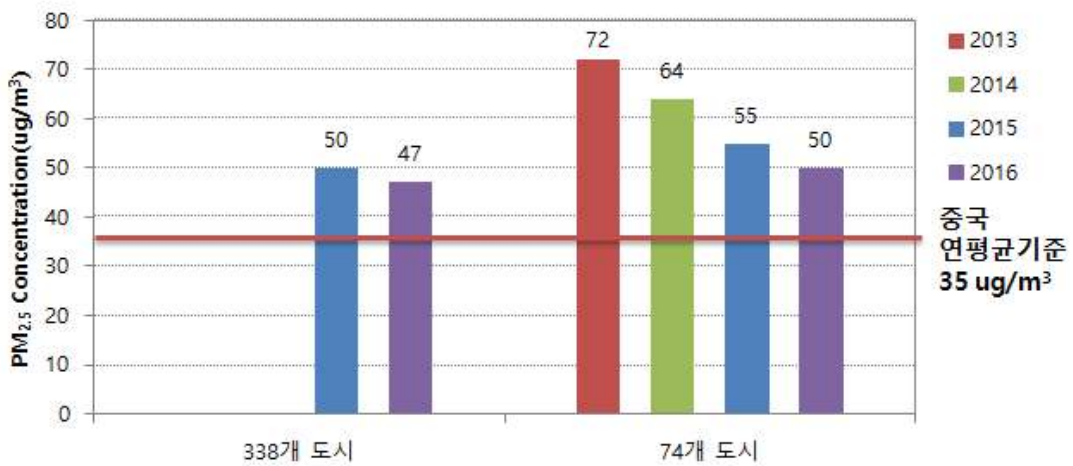
* 징진지, 장강, 주강삼각주 등 중점구역도시, 성급도시 및 계획도시를 말함

1) 중국 저명경제학자이자 베이징 광화관리학원 명예원장인 리이닝(厉以宁)은 중국의 고도성장 병폐를 ① 자원 낭용 ② 생태파괴 ③ 과잉생산 ④ 저효율 ⑤ 구조조정, 발전방식 전환, 과학기술혁신 실기(失期) 등 5가지를 들고 있음(厉以宁: 中国经济面临的十大尖锐问题/www.sina.com)

2) 미국 예일대, 컬럼비아대, 사무엘 파운데이션 등이 대기, 물과 위생, 기후와 에너지 등 9가지 기준을 측정하여 평가. 1위는 핀란드, 한국은 80위

3) 2014년 '중국과 세계화 연구센터(CCG)와 중국 사회과학원이 공동 발표한 '국제인재청서'에서 "중국의 상당수 엘리트층과 부자들이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피해 해외로 이주하는 것으로 조사, 2017년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 리포트 조사결과 중국의 부자 절반이 환경 및 교육문제 등을 이유로 해외이주 희망 조사(연합뉴스/17.7.18일자)

<중국 PM_{2.5}의 연평균 농도변화>



* 참고 : 중국은 <환경공기질량신기준> 개정('12)에 따라, 2013년 74개 도시를 시작으로 PM_{2.5} 측정망을 꾸준히 확장, '14년 161개, '15년부터 지금까지 338개 도시에 적용, 발표해 오고 있음

< 공기질량 신기준 제1, 2, 3단계 감측 실시 과정>

순차	측정도시수	실시방안 발표일
1단계	74개 도시	12.5.24
2단계	161개 도시	13.3.22
3단계	338개 도시	14.5.07

- (징진지 지역)* '16년 PM_{2.5} 농도는 71 μ g/m³로 '13년 대비 33%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WHO기준보다 7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징진지 :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탕산 등 수도권 13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장 삼각주, 주장삼각주와 함께 3대 중점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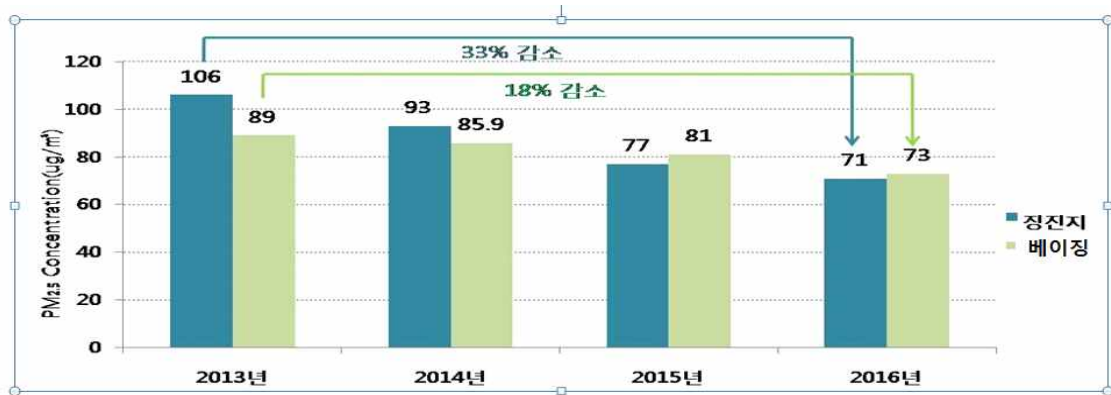
- (베이징) '16년 PM_{2.5} 농도는 73 μ g/m³로 '13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나, WHO기준보다 7배, 서울보다 2.8배(26 μ g/m³) 높은 수준임

< 징진지 및 베이징 연도별 PM_{2.5} 농도 변화 추세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감소율(%)
징진지	106	93	77	71	33.0
베이징	89	85.9	81	73	18.0

자료원 : 중국환경상황공보 각년도 판

<중국 징진지 및 베이징 PM_{2.5}의 연평균 농도 변화>



자료원 : 상동

- 74개 도시의 대기질 지수 분석결과 하위 10개 도시는 주로 북방지역, 그중에서도 징진지지역의 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

<중국 74개 도시의 대기질 지수 상·하위 10개 도시 목록 및 분포도>

순위	도시	종합 지수	최대 지수	주요 오염물	순위	도시	종합 지수	최대 지수	주요 오염물
1	하이커우	2.55	0.67	O3	65	타이위안	7.66	1.89	PM2.5
2	저우산	3.05	0.86	O3	66	지난	7.77	2.17	PM2.5
3	후이저우	3.25	0.83	O3	67	시안	7.82	2.17	PM2.5
4	샤먼	3.29	0.80	PM2.5	68	정저우	7.96	2.23	PM2.5
5	푸저우	3.35	0.77	PM2.5	69	탕산	8.27	2.11	PM2.5
6	선전	3.44	0.84	O3	70	한단	8.56	2.34	PM2.5
7	리수이	3.46	0.94	PM2.5	71	싱타이	8.85	2.49	PM2.5
8	주하이	3.47	0.90	O3	72	바오딩	9.05	2.66	PM2.5
9	쿤밍	3.71	0.80	PM2.5	73	스자좡	9.30	2.83	PM2.5
10	타이(습)저우	3.81	1.03	PM2.5	74	형수이	10.44	3.43	PM2.5

자료원 : 상동(*베이징은 61위)

- 중국은 공업화 *, 도시화 **,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생태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음

* 2016년 중국 공업화청서(工业化蓝皮书)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공업화 지수는 83.69로 공업화 후기의 중등수준, 2020년에 100 예상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도시화는 70~80% 수준으로 중국은 15년 후 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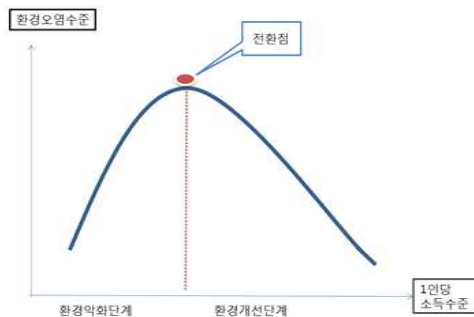
<중국의 도시화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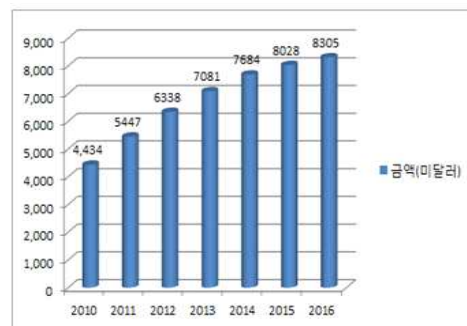
자료원 : 2016年多项宏观经济数据(中国统计局)

- 환경쿠즈네츠 곡선(Envrionmental Kuzets Curve)⁴⁾에 따르면 1인당 GDP가 \$5,000~10,000일때 환경에 대한 정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환경 쿠즈네츠 곡선>



<중국 1인당 GDP>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4)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 우선 정책으로 환경에 덜 신경을 쓰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정부 정책은 제품 생산을 위한 요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 산업분야 등에 집중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그 전환점이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선임

□ (정책) 중국은 친환경산업 육성과 환경 규제 등 투트랙화 정책을 취하면서 환경보호에 나섬

- 중국은 '9.5계획' 기간에 환경보호 개념을 제시했으나, '10.5', '11.5', '12.5', '13.5' 5개년 계획기간을 거치면서 환경보호 정책 수립과 시행에 공을 들이고 있음
 - '12.5 계획'의 중점 육성산업인 7대 신흥전략산업이 그 대표적임
 - . (7대 신흥전략산업)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 '13.5 계획'('16~'20년)에서도 생태환경 총체적 개선 방안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내세움
 - . 특히 '13.5' 계획의 5대 발전이념으로 친환경 부문을 강조
 - . 친환경 저탄소 순환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산업 확대 및 에너지 절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임

<중국의 경제발전시기별 환경정책 방향>

시기	'9.5 계획' ('96~'00년)	'10.5 계획' ('01~'05년)	'11.5계획' ('06~'10년)	'12.5계획' ('11~'15년)	'13.5계획' ('16년~'20년)
핵심 개념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산업 발전	녹색산업 발전	친환경사회	생태문명 건설
정책 방향	환경보호 개념 제시	환경보호 초기 모델	에너지개혁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강제적 감축, 친환경 인프라

자료원 : KITA(2016),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의 대응 비교

- 중국의 환경규제는 '15년 1월 1일부 실시되고 있는 신 '환경보호법'을 기점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17년 양회(전국 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전국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특히 '17년 양회에서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蓝天保卫战)'을 선언한 리커창 총리는 석탄 오염 문제 해결,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자동차 배기가스 정비 강화, 엄격한 환경법 감찰 및 문책 강화, 공무원의 느슨한 법 집행에 대한 조치 약속
- . 영국 파인넨셜타임즈(FT)에 따르면 중국은 '15년 아연, 알루미늄 등 비금속 생산공장이 기준치 초과 공해 유발물질을 배출할 경우, 폐쇄 등 강제적인 행정 조치를 해오고 있음
- . 이에 따라 베이징, 산시(山西) 등 지방정부가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과 석탄공장의 생산량을 30%까지 제한

<중국 고위층의 환경산업에 대한 언급내용>

일 시	내 용
'15년 양회(兩會, '15.3.3~5)	리커창(李克强)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 강조
'16년 1.4일 시진핑의 창장(長江)경제벨트 발전을 위한 좌담회 중	창장 경제벨트 개발시 생태환경복원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강조
'16년 양회(兩會, '16.3.3~5)	리커창(李克强)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환경산업을 중국의 지주산업으로 육성키로 밝힘
'16년 전인대(全國人大)폐막 리커창(李克强)총리 기자회견시(3.15일)	"스모그 퇴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2017년 중국환경보호업무회의(中國環境保護工作會議, '17.1.10~11)	천지닝(陳吉宁) 중국 환경부장관은 '2017년 중국 환경보호업무회의'에서 '대기오염처리', 수질과 토양오염 정화, 생태보호 강도를 높이기로 천명
'17년 3.5일(兩會 개막식)	리커창(李克强)총리 '푸른하늘 지키기 전쟁(藍天保衛戰)'에 돌입 선언
'17년 7.26일 성급 주요 간부 대상 '시진핑 연설' 중	7.26일 담화에서 '리스크 예방', '빈곤문제 해결', '환경오염 예방 및 개선'을 3대 과제로 지적

자료원 : 바이두(www.baidu.com) 기사

2. 중앙정부 차원

가. 중앙감찰 현황

-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보호 감찰'이 '16년에 이어 올해 15개 성을 대상으로 3차, 4차 단속 실시
 - * 지난해 1, 2차로 나눠 16개 성 대상 실시, 올해까지 31개 성을 조사 완료
 - '17년 4.27일 3차 조사를 위해 7개 조를 조직해 7개성<텐진, 산시(山西), 랴오닝(遼寧),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후난(湖南), 구이저우(貴州)> 등에 파견
 - 8.7일부터 남은 개 성<지린(吉林), 저장(浙江), 산둥(山東), 하이난(海南), 쓰촨(四川), 칭하이(青海), 신장(新疆)>에 대한 4차 환경감찰을 실시

<중국 중앙 환경 감찰 현황>

구분	파견 시기	省	감찰 대상(省)	추진상황
시범	2016년 1월	1개 성	허베이성	완료
1차	2016년 7월	8개 성	네이멍구(內蒙古), 헤이룽장(黑龍江), 장쑤(江蘇), 장시(江西), 허난(河南), 광시(廣西), 윈난(雲南), 닝샤(寧夏) 등	2017년 4월 개선방안 공개
2차	2016년 11월	7개 성	베이징, 상하이, 후베이(湖北), 광둥(廣東), 충칭(重慶), 산시(陝西), 간쑤(甘肅) 등	2017년 3~4월 감찰결과 발표
3차	2017년 4월	7개 성	텐진, 산시(山西), 랴오닝(遼寧),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후난(湖南), 구이저우(貴州) 등	2017년 4월 감찰 완료
4차	2017년 8월	8개 성	지린(吉林), 저장(浙江), 산둥(山東), 하이난(海南), 쓰촨(四川), 칭하이(青海), 신장(新疆)	2017년 8월 감찰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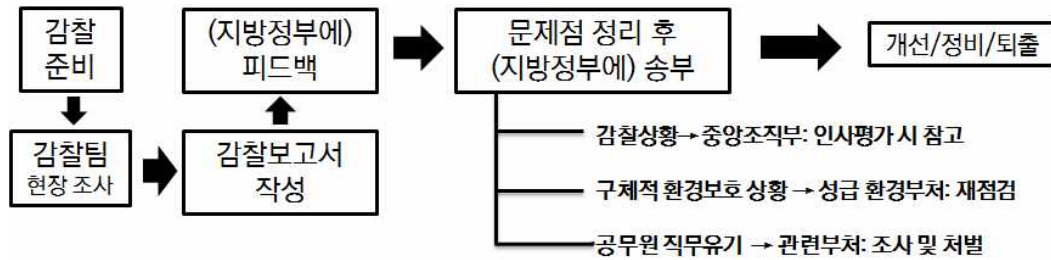
자료원: 환경보호부 발표내용 참고 KOTRA 베이징무역관 작성

<중국의 환경보호 감찰제도>

- 환경보호부가 직접 각 지역에 감찰조를 파견해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제도.
- . '15년 7월 '환경보호감찰방안' 문건 통과에 따라 환경보호감찰기제 마련. 환경감찰 목표를 확정하고, 제도적 근거와 틀 마련
- 오염물질 배출 규제기준과 오염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강제력과 집행력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제 도입
- 지방정부의 눈감아주기식 관행과, 지방 민영기업의 '판시' 로비로 인해, 환경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앙 감찰 조직을 통한 검사를 통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 중앙 환경감찰조는 해당지역에 1개월간 체류하며, 환경 점검 수행 (고발 접수, 정책 수행 여부, 환경 문제 해결 상황 등 점검)

<중앙 환경감찰 업무내용>



자료원: 현지 언론 참고하여 KOTRA 베이징무역관 작성

나. 위반상황 단속 현황

- '17년 8월 24일까지 4차 감찰에 나선 8개 감찰팀이 접수한 민원 건수는 총 2만 343건, 이중 유효 수리 건수는 1만 5,813건, 이 중 중복건수를 제외한 실제 처리건수는 1만 3,826건임.
- 이는 지난해 1차 민원 건수(11,871 건)보다도 많은 수치임.
- 또한 형사 처벌 건도 66명이나 달하고 있어, 강력한 환경단속을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

<중앙감찰 감독 결과표>

성	시정명령(건)	처벌건수	벌금액(만원)	입안조사(건)	구류(명)		문책(명)
					행정	형사	
지린	488	149	467	6	2	2	238
저장	1,988	890	5,398	69	37	36	117
산둥	740	125	778	17	12	4	362
하이난	531	101	467	9	1	17	13
쓰촨	2,806	726	1,089	20	2	7	707
씨장	65	17	65	-	-	-	34
칭하이	553	22	121	1	20	-	117
신장	286	85	1,066	-	6	-	209
합계	7,457	2,115	9,449	122	80	66	1,797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주) 수치는 '17년 8월 24일 22:00 기준임

-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점검 및 단속이 시행되면서 영업정지 등 처벌 받는 기업이 증가
- '16년 중국 환경당국의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8억 위안을 초과했으며, 공장 폐쇄는 1만여 곳에 달하며, 영업 정지 조치는 5,600건을 넘었음

<2016년 환경보호 위반상황 단속 현황>

구분	벌금 (만 위안)	공장 폐쇄·압류	생산 제한·정지	구속	환경법 위반 조사 개시	총 사건
2016년 1월	3,208.9	153	42	67	72	390
2	2,669.8	172	87	76	76	440
3	5,718.5	340	172	170	117	859
4	4,107.4	573	165	282	201	1,268
5	4,532.1	714	230	332	195	1,518
6	6,210.9	990	506	630	179	2,373
7	17,270.0	694	367	63	164	1,372
8	5,118.9	820	315	352	168	1,712
9	5,897.2	531	363	317	146	1,424
10	13,231.1	907	1,020	417	145	2,556
11	6,382.9	1,379	1,010	552	221	3,368
12	7,087.3	2,703	1,396	783	339	5,450
총계	81,435.0	9,976	5,673	4,041	2,023	22,730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주) 매월 발표 통계치를 KOTRA 베이징무역관에서 재편집

- 지난해 1, 2차 환경감찰 결과,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는 고발처리 건수, 입건, 벌금 등이 확연히 늘어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조사 및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
- '17년 들어 진행된 3,4차 환경감찰은 민원 수가 확연히 증가, 이에 따라 입건 등 처벌 건수도 급증세

<2016~2017년 중앙 환경감찰 실시 후 처벌상황>

구분	민원 접수(건)	입건(건)	벌금 (억 위안)	구속(명)	공무원 처벌(명)
시범(허베이)	200	125	-	123	426
1 차	11,871	2,587	1.98	310	3,422
2 차	15,396	5,779	2.43	287	2,682
2016 년 합계	33,000	8,500	4.4	720	6,454
3 차	31,457	8,687	3.6	405	4,660
4 차	39,586	9,181	4.66	364	5,763
2017 년 합계	71,043	17,868	8.26	769	10,423
총계	104,043	26,360	12.66	1,489	16,877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주) 허베이성 처벌 결과는 '16년 4월 8일 기준, 1차와 2차 처벌결과는 각각 '17년 4월과 '16년 말 기준, '16년 처벌 결과는 '17년 1월 12일 기준, 3차와 4차 처벌 결과는 각각 '17년 8월과 9월 기준임.

3. 지방정부 차원

가. 징진지 (京津冀) 28개 도시 대기오염 방지

□ 배경

- 환경보호부장은 '17년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1년간 징진지 지역을 감찰토록 지시('17.4.5, 대기오염방지 영상회의)
 - 환경보호부장은 중국 환경법은 완성단계이나 기업의 환경준법정신과 지방정부의 집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질타('17년 양회기자회견)
 - 리커창 국무원 총리 '푸른 하늘 지키기'전쟁(藍天保衛戰)을 선언, 특히 비밀배출사례, 모니터링 수치조작, 공무원의 느슨한 집행 등에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

□ '징진지 및 주변 도시 2017년 대기오염방지 작업방안' 발표

- '17년 4월 5일, 환경보호부는 1년을 주기로 한 대기오염방지 감독 작업을 강화할 것을 발표

- 환경보호부 자이칭(翟青)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영상회의를 개최해 필요한 인원배치를 지시했으며, 오염물배출허가제도가 정착되고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히 대기기업의 오염배출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
- 특히 중국 전역에 환경법 집행위원 5,600명을 배치·투입하는데, 이는 2월 15일~3월 18일 동안 진행된 1차 관리감독 시 투입된 260명 대비 21배나 증가한 인원임
- 이번 작업은 공기정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직접 지시한 최대 규모의 작업이며, 주로 아래 7가지 분야를 점검할 예정

- ① 관련 지방 각급 정부 대기오염 방지임무 현황
- ② 유관 부서의 대기오염 방지임무 수행 현황
- ③ 고정 오염원의 환경보호장치시설 운영 및 오염물 배출 현황
- ④ 오염수준이 높은 지역에 자동감측시설 설치, 연결 및 운영 현황
- ⑤ 오염물 배출기업의 조사 및 영업정지 조치 현황
- ⑥ 비수기 생산기업의 생산 중단, 감산 등 조치 현황
- ⑦ 유기오염물 배출기업의 관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 환경보호부. 발개위, 재정부, 에너지국,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河北), 허난성(河南), 산시성(山西), 산둥성(山東) 공동으로 작업 방안 발표
- 각 성시(省市)는 해당 지역의 2017년 공기질량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하고, 해당 임무를 향진(乡镇), 거리, 사구(社区)로 배정하고, 책임자와 목표 기한을 명시하도록 함.
- 국유기업들도 이번 작업에 대거 참여시키고 구체적 임무를 명시

<국유기업의 구체적 임무>

기업	임무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 중국석유개발회사(CNOOC), 국가전력망공사	각 성시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천연가스와 전기로 석탄을 대체하는 프로젝트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고, 천연가스 자원 및 전력 자원을 확보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 중국석유개발회사(CNOOC), 화녕(華能), 다탕(大唐), 화덴(華電), 귀덴(國電), 국가전력투자그룹공사(國電投), 신화그룹(神華集團)	'작업방안'이 규정한 관리업무 및 관련 기업 명단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목표 기한을 명시

자료원: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 베이징, 톈진 두 직할시와 기타 26개 도시를 중점 단속지역으로 확정하고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기

<2+26개 도시 현황>

· 직할시: 베이징, 톈진 등 2개 직할시
·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 탕산(唐山),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창저우(滄州), 형수이(衡水), 싱타이(邢台), 한단(邯鄲) 등 8개시
·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양취안(陽泉), 창즈(長治), 진청(晉城) 등 4개시
· 산둥성: 지난(濟南), 쑤보(濰博), 지닝(濟寧), 더저우(德州), 라오청(聊城), 빈저우(濱州), 허저(荷澤) 등 7개시
· 허난성: 정저우(鄭州), 카이펑(開封), 안양(安陽), 허비(鶴壁), 신상(新鄉), 자오쥘(焦作), 푸양(濮陽) 등 7개시
· 기타: 송안신구(雄安新區), 신지시(辛集市), 덩저우시(定州市), 궁의시(鞏義市), 란카오현(蘭考縣), 화현(滑縣), 창형현(長恒縣), 정저우 항공공항구(航空港區)

- 구체적 요구사항

연 번	구 분	내 용
1	철강 과잉	- 랑팡(廊坊)과 바오딩(保定)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 해결
2	오염유발	-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체, 토지·환경보호·품

	산업 퇴출	<p>질관리감독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小散亂汚기업을 10월 말 전까지 모두 영업금지 처분</p> <p>* '小散亂汚'기업은 주로 비철금속 정련 및 가공, 고무 생산, 가죽제조, 화공, 세라믹 제조, 주조, 실크스크린 가공, 압연, 내화재료, 탄소 생산, 석회로, 벽돌공장, 시멘트 가공, 폐플라스틱 가공을 취급하거나 페인트, 잉크, 접착제,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인쇄, 가구 등 소형 제조 가공기업을 의미</p> <p>- 베이징, 텐진, 스자좡, 탕산, 랑팡, 바오딩, 창저우, 형수이, 싱타이, 한단, 정저우, 안양, 자오쥘 등 도시는 2017년 10월 말까지, 기타 도시는 환경법 위법기업을 절반 이상 영업금지 조치</p>
3	노후 보일러 폐기	<p>- 2017년 10월 말까지 베이징, 텐진, 스자좡, 랑팡, 바오딩, 지난, 정저우 행정구역에서 10T/h 및 그 이하의 석탄 보일러, 경영용 석탄난로를 대부분 폐기</p> <p>- 기타 성시의 계획구(建成區) 및 현(縣)정부 소재지는 10T/h 및 그 이하의 석탄 보일러의 사용을 전면 금지, 석탄 난로를 전기 난로, 가스난로로의 대체작업 가속화</p>
4	배출허가권	<p>- 화력발전 업종은 2017년 6월 말까지, 철강, 시멘트 업종은 2017년 10월 말까지 배출허가증 발급을 완료</p> <p>- 의약, 농약, 포장과 인쇄, 공업도장 등 업종의 배출허가권을 우선 심사 및 발급</p>
5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p>- 석화, 의약과 농약류, 자동차 제조, 기계설비 제조, 가구 제조 등 공업 도장류, 포장인쇄 등의 VOCs 관리를 시행해 2017년 10월 말까지 전반적인 관리 작업을 완료할 것</p> <p>- VOCs 함량이 낮은 페인트, 유기용제, 접착제, 잉크 등 원료 및 보조제의 사용을 장려, 전체적인 제조공정을 개선</p>
6	교대생산	<p>- 시멘트, 주조(전기난로, 천연 가스 난로 제외), 벽돌공장 등 업종은 교대생산제 실시</p> <p>- 스자좡, 탕산, 한단, 안양 등 주요 도시는 난방공급 기간 동안 철강 생산을 용광로의 생산능력에 따라 50%로 제한</p>
7	생산량 통제	<p>- 난방공급 기간 동안 전해아연 생산을 30% 이상 제한</p> <p>- 산화알루미늄기업은 30% 제한, 특별 배출 기준 미달 탄소 기업은 생산을 전면 중단, 특별 배출 기준 도달 기업은 50% 이상 생산 제한</p> <p>- VOCs 배출 제약공장과 농약공장은 난방공급 기간 원칙상 생산 중단</p>

자료원: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주) 교대생산제(錯峰生産)이란 오염물 배출 피크를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생산 시간 대에 생산하는 제도를 지칭

나. '산란오' 기업 특별 단속

○ 산란오(散亂汚) 기업이란?

- 흩어져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오염기업'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아래 유형에 해당됨. 산란오 기업 유형에 따라 퇴출, 이전, 개선 등으로 조치 추진

- ① 방산증, 토지증 미보유기업
- ② 허가증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비준 미획득 기업
- ③ 공장과 허가증발급장소가 일치하지 않은 등기법 위반기업
- ④ 국가정책, 지방 토지 계획에 부합되지 않은 기업
- ⑤ 오염 과다배출, 에너지 과다소모, 낙후 업종 등 국가가 명시한 업종
- ⑥ 허가증이 있으나 현장에서 기준 초과 등 법률 위반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기업

○ 동 방안에는 '산란오' 기업정리를 비롯하여 강도 높은 기업퇴출 등 구조 조정 실시

- 특히 '산란오' 기업에 대해서는 선가동 중지 후조치(퇴출, 개선, 이전 등)

○ 산란오 기업은 원칙적으로 퇴출이전·개선, 구체적 조치는 지역에 따라 다름

- 허가증 없는 기업은 퇴출, 허가증이 있고 현장 단속된 기업은 개선 후 가동, 위법 토지건립 등은 적법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산란오 퇴출조치는 1) 환경개선 2) 공급측 개혁 3) 법치준수 등 3개 측면에서 강도 높게 추진

- 구체적 조치는 선 가동정지 후 개선원칙, 2단3청* 적용

* 2斷3淸: 전기/물 공급 중단, 원자재/제품/설비 제거

- 퇴출시한은 대부분 9월 말, 6개 성시 약 17만 8,982개 대상

<'17~'18년 정진지 및 주변지역 도시 분산오염기업(산란오) 정돈표>

	지역	도시	정돈 대상 기업수(개사)				완성 기한
			영업정지	개선	이전	계	
1	베이징 (北京)	베이징시(北京市)	5,500			5,500	'17년 9월말
소계			5,500			5,500	
2	텐진 (天津)	텐진시(天津市)	5,900	9,504		15,404	'17년 9월말
소계			5,900	9,504		15,404	
3	허베이성 (河北省) (11개)	스자좡시(石家庄市)	1,768	1,561	42	3,371	'17년 9월말
4		탕산시(唐山市)	464	250	225	939	'17년 8월말
5		바오딩시(保定市)	1,484	1,012	280	2,776	'17년 9월말
6		랑팡시(廊坊市)	10,032	1,964	7	12,003	
7		창저우시(沧州市)	1,972	3,536	480	5,988	
8		형수이시(衡水市)	2,623	183	1,512	4,318	
9		싱타이시(邢台市)	4,006	1,318	135	5,459	
10		한단시(邯郸市)	14,145	17,464	3,420	35,029	
11		송안신구 (雄安新区)	4,595	2,239	5	6,839	
12		신지시(辛集市)	179	23	5	207	
13		딩저우시(定州市)	374	145	5	524	
소계			41,642	29,695	6,116	77,453	
14	산시성 (山西省) (4개)	타이위안시(太原市)	600	384		984	'17년 9월말
15		양취안시(陽泉市)	532			532	
16		장즈시(長治市)	813			813	
17		진청시(晋城市)	349			349	
소계			2,294	384		2,678	
18	산둥성 (山東省) (7개)	지난시(濟南市)	5,424	1,766		7,190	'17년 9월말
19		쯔보어시(淄博市)	4,779	18,535		23,314	
20		지닝시(濟寧市)	1,319	750		2,069	
21		더저우시(德州市)	3,481	4,472		7,953	
22		랴오청시(聊城市)	3,113	5,361		8,474	
23		빈저우시(濱州市)	1,408	506		1,914	
24		허저시(荷澤市)	3,691	622		4,313	
소계			23,215	32,012		55,227	
25	허난성 (河南省) (11개)	정저우시(鄭州市)	3,799	3,164		6,963	'17년 9월말
26		카이펑시(開封市)	963	479		1,442	
27		안양시(安陽市)	2,487	92		2,579	
28		허비시(鶴壁市)	734	321		1,055	
29		신상시(新鄉市)	1,624			1,624	
30		자오취시(焦作市)	1,380	943		2,323	
31		푸양시(濮陽市)	2,194	2,987		5,181	
32		궁의시(鞏義市)	325	11		336	
33		란카오현(蘭考縣)	84	202		286	
34		화현(滑縣)	455	79		534	
35		창위안현(長垣縣)	240	157		397	
소계			14,285	8,435		22,720	
합계(35개 도시)			92,836	80,030	6,116	178,982	

자료원: 주중 한국대사관

□ 2017년 춘계 특별단속

- 중국 환경보호부 5,600명의 전문 환경단속요원을 선발, 징진지 지역에 대한 환경감찰 진행
 - 주요 감찰대상은 散亂企業(소규모 분산기업)으로 3無기업(경영허가증, 경영장소, 자금)
 - 실제 공장은 가동중이면서 감찰팀이 도착하면 공장 폐쇄, 도주, 진입거부 등 다양한 행태로 감찰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보호부에서 이에 대한 엄벌을 경고
 - 공장주변이나 내부고발자에 의한 신고전화, 편지 등이 급증, 감찰반은 이러한 신고에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시민신고를 장려

<2017년 4월 특별단속>

시기	감찰 기업 수	적발기업 수 및 적발 내용
4.7~27.	5,713개	3,832개(67%)적발, 이중 영세기업의 위법생산 49, 오염물 초과 배출 3,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소홀 7, 방지시설 미설치 및 비정상 운영 44, 실시간 측정자료 조작 2, 비산먼지 방지부실 93, 노천소각 등 기타 47개 기업
5.1.	240개	166개(69.2%) 적발, 특히 4월 29일~5월 1일 노동절 기간에 야간기습 감찰을 실시, 오염물질 위법배출 65개, 방지시설 미설치 14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4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소홀 5개 적발
5.3.	252개	160개(63%) 적발, 이중 오염물질 위법배출 68개, 기준초과 1개, 방지시설 미설치 12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1개, VOCs 관리 소홀 3개
5.8	301개	236개(78.4%) 적발, 이중 오염물질 위법배출 75개, 방지시설 미설치 20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1개, VOCs 관리소홀 22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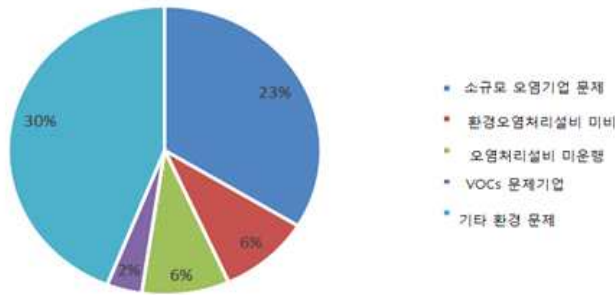
자료원: 주중 한국대사관

- 징진지 지역 환경 점검 결과,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17년 5월 12일까지 감독 결과 9,937개 기업을 조사했으며 이 중 6,634개 기업 적발 (조사 기업의 67.06%를 차지).
 - 소규모 오염기업(散亂汚)이 2,249곳, 오염물처리시설미비 636곳,

오염처리 시설이 정상적 운행되지 않는 기업 604곳, VOCs 문제기업 242 곳으로 나타남.

* 징진지 지역에만 소규모 오염기업이 5만 6000여개에 달함.

<2017년 징진지 환경점검 결과(5월 12일 기준)>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 2017년 추동기 특별순찰

- 중앙 환경보호부와 징진지 및 인근 6개 성(시) 지방정부가 '소규모오염기업(散乱污)'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
 - '17년 9.1일~'18년 3.29일
 - 소규모오염기업(散乱污), 보일러 개조, 청정 난방 및 연료 교체, 공업류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공업류 도태 및 이전 프로젝트, 중점 업종 오염배출물 허가증 발급, 휘발성 유기물 정비 프로젝트, 공업 기업 방진 관리 현황, 스모그 날씨 응급 조치 등에 대한 감독 강화
- 102개 팀의 순찰공작조를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 파견, 4개월간의 일상적인 순찰 업무 수행
 - '17년 9월 15일~'18년 1월 4일
 - 모든 파견인원은 환경보호부 직속 단위에서 차출. 매회 연속 14일간 순찰하며, 2주에 1회씩 교체하며, 매회 총 310명, 총계 2,430명이 동원될 예정

- 환경보호부가 각급 시와 현 정부에 제출한 환경문제 시정상황 감독, 과거 시정된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
- 관련 자료 열람 및 좌담회, 현장 조사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방지 업무 및 감독 상황 조사

다. 베이징지역 자체 단속

□ 배경

- '17년은 베이징 대기오염 예방'관건의 해'
 - '17년은 중국 '대기10조' 1단계 결전의 해, 하지만 베이징의 대기기준 달성 불투명
 - 베이징 PM2.5 농도는 '14년 $86.2\mu\text{g}/\text{m}^3$ →'15년 $80.6\mu\text{g}/\text{m}^3$ →'16년 $73\mu\text{g}/\text{m}^3$ →'17년 $60\mu\text{g}/\text{m}^3$ (목표치)
 - 지난해 감소폭은 9.9%,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삭감해야만 목표치 달성 가능
 - * 베이징시 PM2.5 농도는 서울($26\mu\text{g}/\text{m}^3$)의 2.7배, WHO 권고기준($10\mu\text{g}/\text{m}^3$) 약 7배 수준
- 올 5월 환경보호부 부장 출신인 천지닝(陳吉寧) 베이징 시장이 전격 취임하면서 역대 최고 강도로 환경 단속 실시
 - 중국 명문 칭화대 총장을 거쳐 환경보호부 부장(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스모그와의 전쟁'을 진두지휘 했으며, 시장 취임 이후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藍天保衛戰)'에 돌입
 - 또한 올해 5월 베이징시 당서기로 취임한 차이치(蔡奇)는 대표적인 시진핑 주석의 라인인 시자권(習家軍)으로 '16년 10월 베이징 대리 시장으로 취임한 후 7개월 만에 베이징 수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면서 연내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 환경단속 강화
- 베이징시는 각 구에 환경보호부처와 환경경찰로 구성된 순찰팀을 파견하여 환경단속 실시

<중국의 환경경찰 역할>

- * 환경보호국이 법집행 기능 부재를 해결하고자公安부처에 환경감찰팀을 신설하면서 나타나기 시작
- * 명칭과 환경감찰 이외의 관할기능은 지역에 따라 다름.
- * 베이징 환경경찰은 2017년 1월 公安국 산하에 신설된 "환경식품약품과 여행안전보위팀", 환경감찰 이외에도 식품, 약품, 관광시장에 대한 감찰 및 법집행 권한을 보유

자료원: 현지 언론 참고하여 KOTRA 베이징무역관 작성

□ 베이징 '100일 행동'

- 올 4월말부터 7월말까지 100일 간 '100일 환경보호 전문 법집행(百日環境專項執法行動, 이하 '100일 행동')' 실시
 - '100일 행동'은 오염원을 "고정 오염원"과 "이동 오염원"으로 구분하여 단속
 - 고정 오염원 단속은 주로 공장, 식당, 자동차수리시설, 오수처리장, 소각시설, 의료폐기물 처리장과 대학교 등을 중심을 이뤄졌음.
 - 이동 오염원 단속은 자동차, 특히 타 지역 자동차의 베이징시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 '100일 행동'으로 적발된 환경위법사건은 7,721건, 처벌금액은 8,361만 위안에 달함.
 - 그중 환경보호법에 의해 검거된 중대 환경위법사건은 251건, 폐쇄된 생산시설은 199곳, 대표자 구속 31건에 달함.
 - 환경범죄로 인정되어 公安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15건
 - * 환경오염이 엄중한 상황으로 인정되고 '범죄'로 판결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

□ '산란오 기업' 정비(打散治汚)

- '17년 8월부터는 매월 2개 구를 대상으로 '산란오 기업' 정비(打散治汚) 특별단속 실시 중

- 베이징시 환경감찰팀(環境監察總隊)과 환경경찰이 출동하여 베이징 각 구(區)의 소규모 오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오염기업 정비 및 퇴출 특별단속임.
- 통저우를 시작으로 현재 9월까지 총 4개 구에 점검을 실시. 총 189개 기업의 환경오염문제가 적발, 점검 당시 폐쇄된 생산시설 17곳, 구속은 16건에 달함.
- 베이징시는 행정구역상 총 16개 구가 있으며 도심지역 2~3곳을 제외한다면, 지금의 단속 속도로 진행 시 연말까지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베이징시 '산란오 기업' 정비 결과>

시기	구(區)	점검	적발기업	현장 폐쇄	구속
2017.8월	통저우(通州)	-	37	4	2
	창핑(昌平)	96	59	4	5
9월	화이러우(懷柔)	53	53	4	4
	핑타이(豐臺)	107	40	5	5
합계		-	189	17	16

자료원: 베이징시환경보호국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올 상반기 이미 가구 가공, 도장 등 2,860개 기업을 생산 정지, 폐쇄 또는 이전조치를 통해 정리함
- 연내 약 5,500개 산란오 기업에 대한 퇴출을 마무리할 예정

□ 오염업종 퇴출

- 베이징시는 ▶환경오염 개선 ▶공급측 개혁 ▶비(非)수도기능 분산 등을 위해 '14년 10월 첫 '오염생산 퇴출대상 공업 및 설비 목록'을 발표
- 2014년판 퇴출목록은 155개 업종을 퇴출한다고 명시
- '17년 7.27일에 베이징시정부는 '17년판 베이징시 오염생산 퇴출대상 공업 및 설비 목록을 발표하고, '17년 연말까지 172개 오염업종을 퇴출시킬 예정
- * '14년판 목록 이후 퇴출목록 발표는 이번이 두 번째임. '17년판 목록은 '14년판을 바탕으로 17개 업종을 추가, 5개 업종을 수정

- 철강, 유색금속, 건축자재, 화학공업, 방직날염, 인조판 및 가구, 의약, 기계, 인쇄, 제지 등 172개 환경오염 유발 업종을 퇴출 방침
- 주로 오염배출 과다, 에너지 소모과다, 낙후 업종, 수도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중앙정부가 명시한 노후 설비 등이 퇴출업종에 해당
 - '2017년판 베이징시 오염생산 퇴출대상 공업 및 설비 목록' 원문 확인
 - 링크 클릭 <http://www.bjtz.gov.cn/n95/n534/n705/c15015203/content.html>

□ 공업대원(工業大院) 폐쇄

- 환경보호 차원 외에도, 비(非)수도기능 분산을 위해 베이징시 외곽의 '공업대원*'을 연내 철거 계획
 - * 공업대원(工業大院)이란 산업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환경오염 유발 업종이 산재돼 있는 공업구를 지칭. 정부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육성한 공업원구와는 다른 개념임
- 현재 베이징에는 약 130개의 공업대원이 있으며, 올 연말까지 총 60개의 공업대원을 철거할 예정임(통저우 26개, 창핑 24개, 다싱 7개, 화이러우 2개, 팡산 1개 등).
- 통저우구 89개 공업대원 중 22개가 7월 말에 철거했으며, 다싱구는 9월 초 기준 90% 이상의 철거 완료

라. 기타지역 자체단속

□ 산둥성 화공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실시

- 산둥성은 6월 22일부터 화공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전역 화공생산기업 245개사 퇴출, 993개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
 - 점검실시 후 산둥성 17개시에서 전문팀을 구성하여 세밀한 점검을 시행
 - 점검을 통해 산둥성 전 지역 화공 안전우려사항 79,004건을 제거하였고, 부과벌금은 3,115만 위안에 달하였음.

- 전면적인 점검 실시 후 산둥성 화공생산기업은 '15년 대비 1,910개사 감소(이는 화공생산기업 총수의 20.1%를 차지)

□ 선양(沈阳),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시 벌금 최고 100만 위안 부과

- 선양시 환경보호국은 단속을 피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시 10~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 (2017년 3월)
- 특히, 배출량 측정기, 사설 설비를 이용해 대기오염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생산중지명령과 함께 40~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
- 그 이외에도, 세탁소와 자동차정비소가 폐기물 및 악취처리 시설 없이 영업하는 것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1만~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이라 밝힘

II. 중국 환경 주요 법규 및 규제강화 동향

1. 법률체계 및 관리감독체계

가. 법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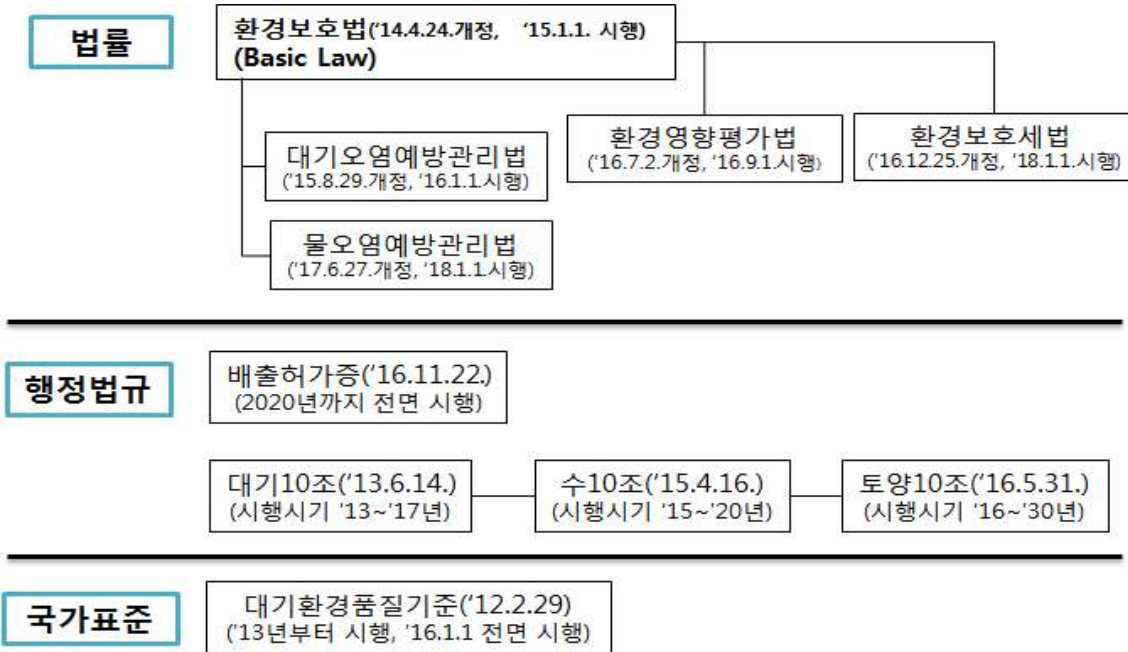
- 중국 환경법률체계는 환경기본법인‘환경보호법’을 기반으로, 입법 절차를 거친 법률과 국무원 및 산하 부처에서 제정, 발표한 행정법규 및 각 지방법규와 지방행정규정으로 구성
 - 국무원 및 산하 부처에서 제정, 발표한 행정법규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환경단속을 실행하는 근거로 작용.
 - 또 지방인민대표대회(상무위 포함)에서 통과된 지방법규, 지방정부가 발표한 행정규정은 해당 지역에서 법적/행정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중국 환경보호법 제도 분류 및 제정기관>

구분	법규유형	제정기관	일반적 명칭
중앙	법률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국회격) 제정(과반수 찬성)	○○법
	행정법규	국무원 제정	○○조례 ○○방법
	부처규정	국무원 산하 부처(국가발개위, 환경보호부) 제정	○○방법 ○○통지 ○○의견
지방	지방법규	성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성 ○○조례
	지방정부 행정규정	성급 및 시급 지방정부(행정기관) 제정	○○성○○ 방법
기타	국제환경 조약	중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환경조약 (국내법보다 높은 법적구속력이 있음)	-
	환경기준	국가환경표준은 환경보호부가 제정 지방환경표준은 성인민정부가 제정 지방환경표준은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제정 가능	○○표준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중국 환경보호 법 체계>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나. 관리감독체계

- 중국의 환경보호관리감독은 환경보호부 주관 하에 분야별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있음

* 환경보호부는 '08년 3월 국무원 개혁 중 “국”에서 “부”로 격상됨

<환경보호 분야별 주관기관>

분야	관리부처	관리내용
대기	환경보호, 발개위, 기상 등 부처	- 발개위, 기상부처: 기후 변화 관리와 기술 서비스 담당
물	환경보호, 발개위, 수리, 건설, 농업, 해양 등 부처	- 환경보호부 : 물오염 예방 - 수리부 : 물자원활용과 보호 - 건설부 : 도시생활배수처리 - 농업부 : 농업 및 어업오염원 관리, - 해양부 : 해양환경보호
소음	환경보호, 도시관리, 교통, 철도, 항공 등 부처	- 도시관리부 : 상업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적발, 긴급점검, 벌금 등 담당
토양	환경보호, 국토, 농업 등 부처	- 국토부, 농업부 : 경작지, 초원, 하구의 생태환경보호 담당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1998년 성, 시, 현급 지방정부에는 중앙 환경보호부(국)의 업무지도를 받는 환경감찰(監察)기관을 설립
 - * (성) 환경감찰총대(總隊), (시) 환경감찰지대(支隊), (현) 환경감찰대대(大隊)
- 각급 환경감찰기관은 1) 법집행, 2) 오염물질등록제도 시행, 3) 중대 환경문제 조정 및 해결, 4) 환경오염사고 조사, 5) 오염물배출비용 징수, 6) 돌발환경사태 대응, 7) 일반적 환경행정관리, 8) 환경오염 적발 접수, 9) 환경감독 실행 등 업무를 수행
-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역할 분담은 중앙정부가 국가차원의 정책, 조치를 제정, 지방정부는 관할지역 내 환경오염 예방 및 정책조치 실행 등

<환경법 집행기관 및 역할 분담>

구 분	기 관	역 할
중앙	환경보호부	* 국가차원의 정책 및 조치 완비화 * 전국 환경보호 평가 계획 제정 및 실시 * 거시적 조정, 업무지도 및 감독
	해양, 항만, 군대, 교통, 철도	* 주관분야의 환경오염 예방 및 감독관리
지방	환경보호부처	* 관할지 내 환경오염 예방 * 환경보호 목표책임제에 의거 평가, 점검
	토지, 공업, 임업, 수리행정부처	* 주관 분야에 대한 감독 및 자원 보호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2. 주요 법규

가. 환경보호법(環境保護法)

- 중국의 신(新) 환경보호법은 '15년 1월 1일부 시행되고 있음
 - 중국 최초의 환경보호법은 '79년 제정된 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89년에 정식으로 통과 및 시행됨.
 - 그후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가 '14년 4월 시행 후 첫 개정을 거쳐 재탄생

- 환경 관련 법률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기본법(Basic Law, 基礎性法律) 역할을 담당
 - 신 환경보호법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신 환경보호법에 따라 적용하고 신 환경보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기타 단행법(單行法)을 적용

- 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 '89년판의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증가, 처벌수준 또한 대폭 확대
 - 그동안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문제 개선을 위해 신 환경보호법에선 엄중처벌 기준 마련
 - 일(日) 단위로 벌금을 정산하고 벌금 액수의 상한선 없음
 - 환경보호평가기관, 감찰기관 및 기타 환경보호 관련 기관이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보호 관련 부처에 권한을 부여해 압류, 차압 등 강제성 행정권과 생산제한 및 생산정지 처벌 조치도 가능하도록 함

- 중국 기업 및 외자기업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
 -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 적용(신 환경보호법 제3조)

<신 환경보호법 주요 체크 포인트>

연 번	포인트	내 용
1	환경 리스크 평가제도	- 생태보호지역을 엄격히 규정, 환경 리스크 평가제도(環境風 險評估制度), 생태환경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2	관리체계 및 권한 부여	- 환경보호부처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설비 및 기계를 압류 (查封扣押權)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감독관리 주체의 권 한 강화 및 엄중처벌을 통한 환경규제 강화
3	벌금 상한 폐지	- 벌금은 일(日) 단위로 적용하고 상한 제한을 두지 않아(上不封頂) 환경오염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대화
4	지방관리 책임	- 환경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 관원, 특히 시장, 부시장, 현장(縣長), 부현장(副縣長) 등에 대해 상황에 따라 책임을 추 궁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면직도 가능함을 규정함.
5	오염물 배출 허가제도	- 기업과 생산경영자는 오염물 배출 허가증(排污許可證)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 배출 및 처리를 진행 - 오염물 배출 허가제도는 중국 환경 관리의 기본지침이 됨
6	공익소송	-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 개념 제시 - 공익소송 주체를 관련 시민단체에까지 확대 -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감독관리 체제 구축
7	경보	- 환경오염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環境污染公共監測預警機制) 관련 요구 제출 -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환경오염 상황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시 리스크 상황을 공고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함.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나. 환경영향평가법(環境影響評價法)

- 환경영향평가법은 '16년 7월 개정, 그해 9월 1일부로 시행
 - '0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나 신 환경보호법의 시행수요에 따라 개정
- 개정판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등록(登記) 수속을 간소화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함
 - '15년 3월 중국 환경보호부는 '환경영향평가 위법항목 책임추궁을 더
욱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를 통해 '허가없이 먼저 건설', '자의적으
로 중대한 변경 실시' 등 환경영향평가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
하고, 환경영향평가 위법항목 책임추궁을 한층 더 강화한 바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 용
행정 간소화	1. “환경영향평가를 심사통과의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 폐지 2. 환경영향등기표는 기존의 심사(審批)→등록(備案)으로 규제완화 3. “물·토양 유지방안 심사를 환경영향평가의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폐지 4. 업종 예비 심사(行業預審)를 폐지
법집행 강화	1. 환경영향평가결론과 심사의견에 따라 건설규획 초안을 개선하도록 함. 2. ‘선 환경영향평가서 발급, 후 건설’ 원칙 엄수 및 위법비용 증가 - “허가없이 먼저 건설”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20만 위안에서 프로젝트투자액의 1~5%로 수정, 사실상 위법비용 대폭 증가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환경영향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중 택 1 발급, 대부분은 등기표에 해당됨

<환경영향평가 진행 절차>

<p>(1단계, 건설전) 업종, 사용기술 등을 심사비준관원에게 제출, 환경영향 평가 수속개시→국가나 지방 산업정책 등에 따라 동의결정</p> <p>(2단계, 계약단계) 평가전문기관(자문기관)과 계약서 체결, 보고서 작성, 전문가 평가의견반영후 환경담당기관에 제출, 공시</p> <p>(3단계, 건설단계) 심사비준관원의 검토의견제시, 반영후 3동시(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생산)수행으로 건설</p> <p>(4단계, 검수단계) 생산시설 임시가동 동안 심사비준관원에 검수요청 또는 배출허가증신청→ 검수전문기관에 위탁검수, 검수보고서 작성, 검수미통과시 개선</p> <p>(5단계, 운영단계) 생산시설 운영(오염물배출정황 등 사회공개, 부과금 납부 등)</p>
--

<환경영향평가 단속 체크 포인트>

1. 행정기관 심사비준 의견 철저 이행(단속시 가장 먼저 등기표 확인후 부가된 조건 이행여부 점검)
2. 심사비준없이 가동시, 선 가동중지조치, 업종시 원상회복, 공안으로 이송처리 (업종한 경우 3~7년징역)
3. 기타 가벼운 사안위반은 개선조치, 위반행위가 범죄구성요건이 아닌 경우 행정구류 5~15일
4. 등기표는 소재지 현에 등록하면, 해당부처는 인터넷으로 심사비준을 하므로 반드시 등록여부 확인
5. 환경보호설비는 검수 합격후 가동, 평가보고서와 보고표 대상은 5년마다 재심사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다. 환경보호세법(環境保護稅法)

- 환경보호세법은 '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
 - '16년 12월 25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됨
- 환경보호세법은 기존 오염물배출비제도의 법적 강제성 부족, 행정권 간섭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
 - '79년 중국 첫 환경보호법 시행 당시 '오염물배출비제도(汚染物排放收費制度)'를 확립
 - '03년 국무원은 '오염물배출비 징수사용관리조례'를 발표하여 오염물배출비제도의 징수, 사용 및 관리제도 규범화
 - '11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환경보호 핵심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환경보호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을 밝히고 입법절차 추진

<환경보호세법 주요 포인트>

연번	포인트	내 용
1	납세자	중국 영내와 관할 하에 있는 기타 해역에서 납세 대상인 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체 및 생산 경영자
2	납세대상 오염물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3	세금	대기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세금은 당량(當量)*당 1.2위안(약 201.34원) 수질 오염물질은 1.4위안 고체 폐기물 경우 그 내용에 따라 t당 5위안에서 1,000위안 소음은 일정 기준 데시벨 초과 분량에 대해 각각 월 350위안~11,200위안을 징수 * 당량(equivalent weight) : 정량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의 양을 서로에 대해 당량이라고 함, 당량을 g단위로 표시한 것은 g당량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납세 대상 오염물질 및 세금납부 기준>

세목	세금납부 기준
대기오염	1.2 위안/당량(當量)
수질오염	1.4 위안당량/(當量)
고체 오염물질	버력 5 위안/톤 미광 15 위안/톤 위험폐기물 1000 위안/톤 분말 연탄재, 고로 슬래그, 기타 고체폐기물 25 위안/톤
소음	기준 초과 분량 1~3 데시벨 35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4~6 데시벨 70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7~9 데시벨 1,40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0~12 데시벨 2,80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3~15 데시벨 5,60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6 데시벨 11,200 위안/월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라. 대기오염방지법(大氣污染防治法)

- 중국 신'대기오염방지법'은 15년 만에 개정되어 '16년 1월 1일부 시행중임
- 대기오염방지법은 '87년 제정, '88년 6.1일부 시행되어 '95년, '00년, '15년 총 세 차례 수정을 거침

- '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신'환경보호법'과 접목하고 최근 중국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로 풀이됨
- 신 '대기오염방지법'은 초미세먼지 PM_{2.5}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연료 품질 기준 강화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억제를 골자로 함
 - 총 90류 처벌 대상을 확정하고 공업과 도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

<신'대기오염방지법' 주요 단속 포인트>

연 번	포인트	내 용
1	핵심 관리대상	- 석탄연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2	휘발성 유기물질 (VOCs)	- 최초로 휘발성 유기물질(VOCs)를 관리감독대상으로 분류 - '15년 10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징수하기 시작, 석유화학, 포장인쇄 등 업종에서 우선 시행
3	탄소배출 감축	-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석유 등 연료 수입에 대해 품질요구 제시 - 석탄 세광 및 가공제도를 확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제출하고 시행하기 시작
4	관측·조기 경보시스템	-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대기오염 관측·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 대기오염 예방관리 설비는 점검 없이 생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총량 관리 및 분류 관리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호부처에서 총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을 확정 - 주관부서를 환경보호부서로 통일하되 공안, 교통, 철도, 어업관리 등 부서의 관리권한을 제한
5	일수에 따라 벌금부과 (按日計罰)	- 오염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책임 처벌을 규정해 구체적인 처벌행위가 90종에 달함. -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을 50만 위안으로 하는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일수에 따라 벌금부과(按日計罰)' 규정을 추가
6	엄벌	-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접적인 책임 소재가 있는 주관자와 책임자에 대해 해당 기업의 1년 매출액의 50% 이하의 벌금형 - 비교적 큰 대기오염 사고를 유발하면 오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의 1~3배 이하의 벌금, 일반적이거나 다소 큰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오염사고로 인한 직접 손실의 1배~3배 이하의 벌금형 - 심각하고 막대한 대기오염 사고의 경우에는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지방법규 예시 : 상하이시 대기오염방지 조례>

- '14년 10월 1일부로 시행
- ①총칙 ②대기오염 예방 감독관리 ③에너지 소비로 발생한 오염의 예방 ④자동차 및 선박의 오염물 배출 예방 ⑤폐기·먼지·악취오염의 예방 ⑥창장삼각주(長三角) 지역 대기오염 예방협조 ⑦법적책임 ⑧부칙 등 8장 108조로 구성됨
- 법적책임으로는 '가장 엄격하게'가 강조되었는데, 몰래 배출 시 최고벌금은 1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조정했고 일수로 처벌하는 처벌법(按日連續處罰)과 기업체 및 담당자를 모두 처벌하는 '더블 처벌법'을 도입함

마. 물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 물오염방지법은 '17년 6월 개정되어 '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
 - 물오염방지법은 '84년 제정발표된 이래 '96년, '08년 개정된 바 있음
- 개정판 물오염방지법은 총량관리제도와 오염물 배출허가 제도를 골자로 함

<신'물오염방지법'주요 포인트>

연 번	포인트	내 용
1	총량관리제	- 총량 관리 및 분류 관리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 보호부처에서 총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을 확정 * 국가는 중점 물오염유발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 - 총량 지표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발급 중단
2	지방정부 책임 강화	- 성, 시, 현, 향 등 각급 정부의 해당 구역에 대한 물오염 예방 책임을 명확히 규정
3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 직접적으로 공업폐수, 의료폐수 등을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오수집중처리시설 운영업체도 오염물 배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4	관측·조기 경보시스템	-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물오염 관측·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3. 주요 정책조치

가. 5개년 계획

□ 환경보호 5개년 계획

- '16년 12.5일, 중국 환경보호부는 '생태환경보호 13.5 계획'을 발표
 - 계획은 대기품질지표를 최초 도입, 중앙정부의 대기오염예방관리 의지를 구현

<생태환경보호 13.5 계획 중 대기품질지표>

지표	2015년	2020년	누계
지급이상 도시 공기품질 우량일수 비중(%)	76.7	>80	
PM _{2.5} 기준 미도달도시 농도저하율(%)			18
지급이상 도시 중도이상 오염일수 비율 저하율			25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 5개년 계획 중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 중국정부의 환경보호를 위한 오염물질배출감축계획은 11차 5개년
계획부터 시작
 - 지방정부 간부 인사평가에 환경목표를 추가한 '1표부결제도' 도입
 - * 전체 KPI 목표 중 환경목표를 1개 KPI로 추가, 환경목표 강제달성을 위한 조치
 - 이를 위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실적을 상향조정

<5개년 계획 중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

지표	11.5 계획 ('06~'10)		12.5 계획 ('11~'15)		13.5 계획 ('16~'20)		
	2005년 목표	실적	2015년 목표	실적	2015년	2020년 목표	5년간 감소량
공업생산증가액 단위당 물사용량 감축율(%)	30.0	36.7	30.0	35.0	-	-	-
GDP 1만 위안당 물사용량 감축율(%)	-	-	-	-	-	-	23.0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감축율(%)	20 수준	19.1	16.0	18.2	-	-	15.0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화석에너지 소비량의 비중(%)	-	-	11.4	12.0	12.0	15.0	3.0
단위당 GDP에서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율(%)	-	-	17.0	20.0	-	-	18.0
대기	지급이상 도시 공기품질 우량일수 비중(%)	-	-	-	76.7	80.0	-
	PM _{2.5} 기준미달성 지급이상 도시에서 농도저하율(%)	-	-	-	-	-	18.0
지표수	Ⅲ류 이상 비중(%)	-	-	-	66.0	70이상	-
	V류 이상 비중(%)	-	-	-	9.7	5.0 이하	-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소율 (%)	화학적 산소 요구량	10.0	12.5	8.0	12.9	-	10.0
	암모니아성 질소	-	-	-	-	-	10.0
	이산화황	10.0	14.3	8.0	18.0	-	15.0
	질소산화물	-	-	10.0	18.6	-	15.0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주) 11.5 계획, 12.5 계획의 목표와 실적은 모두 5년 간 누계치

나.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 '16년 11월, 중국 국무원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실시방안’ 발표
 - 기업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기초적인 환경관리제도
 - 환경보호부처가 기업에 대해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 해당 허가증에 의거하여 감독관리 진행

- 허가증은 '16년 12월 23일 환경보호부가 발표한‘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관리 잠정방법’에 의거하여 발급

<중국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항목	내용
원칙	-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생산운영시 반드시 취득해야 할 행정허가 -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법에 따라 환경관리요구를 준수·부담해야 함.
목표/임무	- 2020년까지 모든 고정오염원 배출허가증 심사를 완료 - 고정오염원에 대한 과정 관리와 복수오염물질 공동 관리 실시 - 시스템화, 과학화, 법치화, 정밀화, 정보화를 모두 갖춘 ‘1증서’ 관리 실시
적용기업	- 환경보호부에서 ‘오염물 배출허가 분류 관리 목록’ 책정 - 동 목록에서 규정한 업종의 기업을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제도 관리 대상으로 확정
발급기관/ 유효기간	- 현급 이상 지방정부 환경보호부는 관할지 내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심사발행을 담당(지방성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최초 발급한 허가증 유효기간은 3년, 연기갱신의 경우 유효기간은 5년
주요 내용	- 허가증에는 배출을 허가하는 오염물 종류, 농도, 배출량, 배출방법 등 사항을 명확히 하고 오염관리시설, 환경관리요구 등 관련 내용은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오염물 배출기준, 총량관리지표, 환경영향평가서류 및 보고서 등 요구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배출을 허가하는 오염물 종류, 농도 및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확정
관리내용	주로 대기오염물과 물오염물질
제도 시행시간	-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가장 우선적으로 화력발전과 제지업에 대해 시행 - '17년에 ‘대기10조’와 ‘수10조’에서 규정한 중점업종 및 생산과잉업종에 대해, '20년부터는 전국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보급되도록 함.
처벌조치	- 일수에 따라 처벌, 생산억제, 생산정지 및 정비, 조업중단, 폐쇄 등 - 허가증 없이 또는 허가증에 명기된 범위 이외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엄벌, 심각한 정도가 ‘환경범죄’에 해당되면 형사책임도 추궁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배출허가증제도 시행은 환경보호부가 '17년 7월 말 발표한 ‘고정오염원 배출허가증 유형별 관리목록(2017년판, 이하 목록*)’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중국어 명칭: 固定污染源排污许可分类管理名录(2017年版)

링크: http://www.zhb.gov.cn/gkml/hbb/bl/201708/t20170803_419132.htm

- 환경보호부는 2020년까지 82개 업종에 대해 점진적으로 시행 방침
- 오염물 배출량에 따라 44개 업종을 중점관리업종으로, 8개 업종은 간소화관리업종, 남은 30개 업종은 생산규모와 기술특징에 따라 시행하도록 구분
- '17년 연내 15개 업종에 대한 배출허가증 심사 및 발급 완료를 지시
 - * 15개 업종 중 제지와 화력발전은 6월 말까지, 철강, 코크스, 화학공업 등 13개 업종은 연말까지

다. 대기오염 방지 분야

□ 대기 10조(대기오염방지관리행동계획)

- '13년 6월 대기오염 방지 관리를 위한 10대 조치를 바탕으로 그해 9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
 - 시행시기는 '13년~'17년까지 5년 간임

<주요 목표>

- * '17년 전국 일정 규모이상 도시의 PM10 농도를 '12년에 비해 10% 이하 감축
- * 징진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지역의 PM_{2.5} 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축
- * 베이징시 PM 2.5 연평균 농도를 60 μ g/m³

- 10대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기10조'(大气十条)로 불림

<10대 조치>

1. 종합대책 확대, 오염물질 배출 감소(소형 연탄보일러 퇴출, 노후차 퇴출 가속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가솔린 품질향상 등)
2. 산업구조 조정, 최적화
3. 기업 기술개혁 가속화, 기술혁신능력 향상
4. 에너지 구조조정 가속화, 그린에너지 공급 증가
5.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에 대한 시장진입조건 엄격화, 산업의 공간적 분포 최적화
6. 시장메커니즘 기능의 발휘, 환경경제정책 정비(가격, 세제 등 정책에 의한 대기오염예방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장려)
7. 법률체계 정비, 법률 감독관리 엄격화
8. 지역협력체계 구축, 지역의 환경관리 정부기능 인프라 확대
9. 관측경보응급체계 정비, 중오염 날씨에 대한 적절한 대응
10. 정부와 기업의 책임 명확화, 국민참여 독려

- '대기10조'에 기초하여 '13년부터 중앙재정은 대기오염방지관리 전문 펀드를 설립
 - '13~'15년, 254억 위안을 출자, 징진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중점지역의 스모그 감축을 지원
 - '16년 112억 위안을 출자, 상기 중점지역의 대기10조 집행을 지원
- '14년 1월, 환경보호부는 31개 성정부와 '대기오염방지목표책임서'를 체결
 - '17년까지의 PM₁₀/PM_{2.5} 농도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함

<중점 지역 대기오염 개선목표>

구분	감소 목표	지역
PM _{2.5}	-25%	베이징, 텐진, 허베이
	-20%	산시, 산둥, 상하이, 장쑤, 저장
	-15%	광둥, 충칭
	-10%	내몽고
PM ₁₀	-15%	허난, 산시(陝西), 칭하이, 신장
	-12%	간쑤, 후베이
	-10%	쓰촨, 랴오닝, 지린, 후난, 안후이, 닝샤
	-5%	광시, 푸젠, 장시, 구이저우, 헤이룽장
	지속적 개선	하이난, 티베트, 윈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대기환경품질기준

- '12년 2월 29일, 환경보호부는 '대기환경품질기준(GB 3095-2012)'을 발표, 대기품질기준을 단계별로 시행

<대기환경품질기준 단계별 시행범위>

단계	시행 범위	비고
1단계 (‘12년)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 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중점지역 및 직할시와 각성의 성도	공식 시행은 ‘13년부터
2단계 (‘13년)	113개 환경보호 중점도시 및 국가급 환경보호모범도시	공식 시행은 ‘14년부터 161개 도시로 확대
3단계 (‘15년)	모든 지급(地級)시	‘15년부터 시행
4단계 (‘16.1.1.)	전국	전국에서 시행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대기오염 방지 관리 특별규제지역

- '13년 2월 27일, 환경보호부는 '대기오염물 특별 상한치 집행 관련 공고'를 발표하여 총 47개 도시를 특별규제지역으로 지정함
 - 해당 도시에서는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유색금속, 화학공업 등 6개 업종 및 석탄보일러 프로젝트에 대기오염특별배출상한치를 집행

<대기오염 방지 관리 특별규제지역>

권역	지역	도시
징진지	베이징	베이징시 전역
	톈진	톈진시 전역
	허베이	스자좡, 탕산, 바오딩, 랑팡
창장삼각주	상하이	상하이시 전역
	장쑤	난징, 우시, 창저우, 쑤저우, 난퉁, 양저우, 전장, 타이저우
	저장	항저우, 닝보, 자싱, 후저우, 샤오싱
주장삼각주	광둥	광저우, 선전, 주하이, 펄우산, 장먼, 자오칭, 후이저우, 둥관, 중산
랴오닝	랴오닝	선양
산둥	산둥	지난, 칭다오, 즈보, 웨이팡, 르자오
우한 및 주변	후베이	우한
창사 및 주변	후난	창사
청두 및 스촨	충칭	충칭시 도심지역
	쓰촨	청두
대만해협 서안	푸젠	푸저우, 산밍
산시 중북부	산시(山西)	타이위안
관중지역	산시(陝西)	시안, 선양
간닝지역	간쑤	란저우
	닝샤	인촨
신장	신장	우루무치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라. 물오염 방지 분야

□ 수(水)10조(수질오염방지관리행동계획)

- '15년 4.16일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7대 중점유역 수질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수질오염방지관리행동계획(水污染防治行動計劃)'을 발표
 - 수질개선 목표와 주요지표를 확정, 10대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10조'(水十條)로 불림.

<'수 10조' 10대 조치>

1. 오염물 배출 전면 관리, 환경보호 설비가 낙후하거나 오염수 배출이 많은 소형 공업기업과 업종에 대한 정비 실시
2. 경제구조의 전환을 추진하여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실현
3. 수자원 보호를 강조
4. 수질정화 및 물 절약형 기술을 발전시키고 적극 도입
5.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
6. 환경보호 법률, 법규를 정비하고 법 집행을 강화
7. 물 자원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8. 물 생태계 복원 및 보장
9. 정부, 기업, 시민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를 다할 것
10. 대중의 관리감독 수준을 제고

- '수10조'는 76개 항목으로 구분, 238개 수질개선 조치를 명시
 - 그 중 36개 항목은 중국 환경보호부 주관 하에 시행토록 규정
 - 환경보호부 이외 국가발개위, 재정부, 주택건설부 등 부처도 액션 플랜 시행에 참여
- (목표) '수10조'의 핵심목표는 주요 오염수 배출원인 공장, 도시, 농촌, 항만 등에 대해 오염수 배출을 전면 통제하고 제지, 염색, 화공 등 오염물 배출이 많은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
 - 2020년까지 창장(長江), 황허(黃河), 주강(珠江), 송화장(松花江), 화이허(淮河), 하이허(海河), 랴오허(遼河) 등 7대 유역 70% 이상의 수질을 정화처리 후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3등급 이상으로 개선하는 등 구체적 지표도 확정
 - 지하수 사용 비중을 줄이고 수질 정화처리 수준 제고, 정화처리를 거친 후의 재사용율,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절약 등도 목표로 제시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현재의 60~70% 수준으로 물 사용량을 낮출 것도 요구했음.

<‘수10조’의 2020년 목표와 현황>

	구분	2020년 목표
전체	물 사용량	6700억 m ³ 이내
	GDP 1만 위안당 물 사용량	2013년의 65% 수준
	공업 증가치 1만 위안당 물 사용량	2013년의 70% 수준
	물절약형 관개 면적	466,666 km ² [7억 모(畝)]
수질보호	7대 중점유역	70% 이상의 수질을 3등급 이상으로 개선
	최악 지하수 비중	15% 이내
	해수 수질	1,2 등급 70% 수준
재생수	수질정화	3,4 선 도시 85%, 1,2 선 도시 95% 수준
	정화처리 이후 이용률	물 부족도시는 20% 이상, 징진지 지역은 30% 이상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주) 공업 증가치(工業增加值): 화폐로 표시 가능한 공업기업의 모든 생산성과

- 중국 수자원 보호에서의 최대 난제는 공업발전과정에서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수10조’는 수질개선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음.
- 수질오염 개선 이후 ‘정화처리를 거쳐 음용수로 사용가능’한 1~3등급 수질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구체적 지표도 ‘수10조’에 명시돼 있음.

<중국 수질 등급 및 용도>

수질 등급	1~3등급	4등급	5등급
용도	정화처리 후 음용수로 사용	공업용수	농업용수

자료원: 중국 ‘지표수환경품질표준’(地表水環境質量標準)

- 중국 정부가 ‘수10조’를 내놓은 원인은 중국이 심각한 수질오염과 수자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
 - 중국 주요하천은 대부분 오염상태에 있고 호수 등도 부영양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 당국도 주요 관리 지역인 7대 유역의 70% 이상이 오염된 상태로 판단

<중국의 물 부족 상황>

- ☞ 세계의 물 자원총량은 46조 8,700억 m³, 그중 미국이 2조 9,500억 m³
- ☞ 하지만 인구가 미국의 몇 배에 달하는 중국의 수자원 총량은 미국보다 낮은 2조 7,957억 m³에 그침.
- ☞ 1인당 물 자원 보유량, 미국 12,000 m³, 중국 2,186m³

<중국 물 자원 현황>

물 자원 총량 (억 m ³)	1인당 물 자원 (m ³)	1인당 물 사용량 (m ³)	1만 위안 GDP 당 물 자원 소모량(m ³)
27,957.9	2,186.1	453	109

자료원 : 환경보호부

□ 물오염 특별규제지역

-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확정한 물오염물 특별규제지역이 존재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한 특별규제지역은 타이후(太湖)지역임
 - * '08년 9월 1일부터 타이후 지역에서 제지파이프, 전기도금, 깃털공업, 인공피혁공업, 발효류·화학합성류·추출류·중의약류·바이오공학류·혼합류 제약공업, 제당공업, 생활쓰레기 매립장, 농약공업 등 13개 업종에 대해 “물오염특별배출상한치”를 적용
 - 지방정부 광둥성정부가 '12년 주장(珠江) 유역, '14년 저장성정부가 첸탕장(錢塘江) 유역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물오염물 특별 배출 상한치를 적용한다고 발표
 - * (주장 유역) 제지파이프, 인공피혁공업, 제당공업 등 3개
(첸탕장 유역) 제지파이프, 전기도금, 깃털공업, 인공피혁공업, 발효류·화학합성류·추출류·중의약류·바이오공학류·혼합류 제약공업, 농약공업 등 11개

<물오염물 특별배출 상한치 관련 국가표준>

연번	업종	기준명칭(중국어)	국가표준
1	제지파이프	制漿造紙工業水汚染物排放標準	GB 3544-2008
2	전기도금	電鍍汚染物排放標準	GB 21900-2008
3	깃털공업	羽絨工業汚染物排放標準	GB 21901-2008
4	인공피혁	合成革与人造革工業汚染物排放標準	GB 21902-2008
5	발효류 제약	發酵類制藥工業水汚染物排放標準	GB 21903-2008
6	화학합성류 제약	化學合成類制藥工業水汚染物排放標準	GB 21904-2008
7	추출류 제약	提取類型制藥工業水汚染物排放標準	GB 21905-2008
8	중의약류 제약	中藥類制藥工業水汚染物排放標準	GB 21906-2008
9	바이오 제약	生物工程類制藥工業水汚染物排放標準	GB 21907-2008
10	혼합류 제약	混裝制劑類制藥工業水汚染物排放標準	GB 21908-2008
11	제당	制糖工業水汚染物排放標準	GB 21909-2008
12	생활쓰레기 매립장	生活垃圾填埋場汚染物排放標準	GB 16889-2008
13	농약공업	雜環類農藥工業水汚染物排放標準	GB 21523-2008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마. 토양오염방지 분야

□ 토양 10조

- '16년 5.31일, 중국 국무원은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土壤汚染防治行動計劃, 이하 '토양10조')을 발표
 - '토양 10조' 발표와 더불어 당국은 토양오염 방지 관련 법안도 검토 중
- '토양 10조'는 향후 10년 토양오염 개선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
 - '20년까지 오염된 경작지와 오염된 토지의 안전이용률을 90%로, '30년까지는 95%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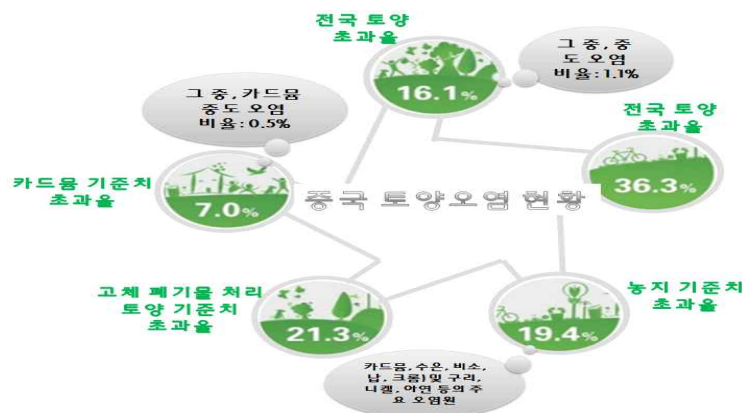
<토양 10조 내용>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을 ‘토양10조(土十條)’라고도 부르며, 아래와 같이 10대 임무를 제시하고 있음

- ① 토양오염조사를 전개하고 토양환경질량상황을 파악한다.
- ② 토양오염 예방관리 입법을 추진하고 법규 표준 체계를 건립한다.
- ③ 농업용지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농업생산환경의 안전을 보장한다.
- ④ 건설용지 진입 관리를 실시하고 거주환경 위험을 예방한다.
- ⑤ 미오염 토양의 보호를 강화하고 신규토양 오염을 엄격히 통제한다.
- ⑥ 오염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토양 오염 예방 사업을 착실히 이행한다.
- ⑦ 오염 관리 및 복구를 전개하고 구역 토양환경질량을 개선한다.
- ⑧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여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추동한다.
- ⑨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토양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⑩ 목표 심사를 강화하고 책임을 엄격히 추궁한다.

- 중국이 ‘토양10조’를 발표한 것은 토양오염의 심각성 때문임
 - '14년 처음으로 발표한 중국의 ‘토양오염 현황조사 공보’에 따르면 중국의 토양 오염율은 16.1%에 달함, 그중 경미한 오염, 경도 오염, 중도 오염, 심각한 오염의 비율은 각각 11.2%, 2.3%, 1.5%, 1.1%임
 - 토지유형별로 살펴보면 농경지, 임지, 초지의 토양오염율은 각각 19.4%, 10.0%, 10.4%
 - 중국 토지 오염유형은 무기물위주로 전체 오염지역의 82.8%를 차지, 무기물오염은 주로 5대 독성 중금속(카드뮴, 수은, 비소, 납, 크롬)과 구리, 니켈, 아연 등이 원인, 이 중 카드뮴 오염이 제일 심각한 상태로 전체 오염의 7.0%를 차지

<중국 토양오염 현황>



자료원 : 환경보호부

4. 최근 환경법 정비 동향

가. 배출허가증제도 관련 규정 집중 발표

- 배출허가증 제도는 2020년까지 집중 단속이 예상되는 환경규제 중 하나
 - '16년 11월 시행안 발표, 1달 만에 발급절차 확정, '17년 7월에는 2020년까지 전면 발급을 위해 업종별 시간표를 제시하는 등 관련 규정 집중 발표
 - * '17년 연내 '15개 업종에 대한 배출허가증 심사 및 발급 완료, 제지와 화력발전은 6월 말까지, 철강, 코크스, 화학공업 등 13개 업종은 연말까지
 - 환보부는 '17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업에 대해 배출허가증에 따른 철저한 관리 시행’을 강조
- 환경단속에서 ‘배출허가증 미취득’을 산란오 기업으로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지정, 미취득 기업 책임자 행정구속 등 현장에서도 ‘배출허가증 취득’의 중요성 강조
 - * 신 환경보호법은 배출허가증 미취득 시 ‘행정구속’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
 - 특히 공장 설립 또는 프로젝트 추진단계의 단속포인트는 ‘영향평가 비준’과 ‘배출허가증 취득 여부’

나. 환경영향평가법집행 중요성 부각

- 환경영향평가법('16.7월 개정) 14년 만에 수정, 엄격 시행에 법적 근거 마련
 -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은 '02년 10월 제정, 신 환경보호법 시행과의 접목을 위해 14년 만에 수정
 - 신 환경보호법에 신설된 5가지‘행정구속 가능한 경우’중 ‘영향평가 미통과’도 포함, ‘환경영향평가 전 공사시 이전상태로 회복 및 벌금’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 유무를 단속 포인트로 확정, 엄격히 점검
 - 산란오 기업으로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지정, 환경영향평가 미취득 공사에 대해 엄벌하는 등 현장단속 강화

다. VOCs 배출억제 조치 발표

- 최근 오존(O3)과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가 중국 환경단속 포인트
 - 오존과 미세먼지가 주요 대기오염문제로 대두되면서 중국 환경당국의 대기오염 단속 포인트가 기존의 유황산화물과 질산화물, 먼지 등에서 VOCs로 바뀐 것임.
 - 지난 9월 14일 중국 정부가 최초로 “13.5 기간 VOCs 예방관리 작업방안”을 발표하여 중점지역, 중점업종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고정오염원의 배출허가제를 착실히 시행하여 대기오염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요 목표를 제시
 - 1) 2020년까지 VOCs 오염예방관리체계를 구축
 - 2) 중점 지역, 중점 업종 VOCs 배출억제, 배출총량을 10% 이상 감축
 - 3) NOx(질산화물) 오염물질과 배출억제를 실시하여 대기오염 개선
- 향후 VOCs 공업 배출허가증 관련 기술규범과 감독 관리요구를 명확화, 구체화하여 배출허가증 제도를 전면 실시할 계획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전면실시 시간표>

연번	시간표	업종
1	2017년 말까지	징진지와 산둥성,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지역 석유화학 업종
2	2018년 말까지	제약, 농약 등 제조업
3	2020년 말까지	전자, 포장인쇄, 자동차 제조 등 업종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라. 수직관리제도 도입

- 환경업무는 시, 현 단위에서 상급기관인 성의 환경라인 지휘감독을 직접 받도록 전환하여 당의 입김이나 성의 개발부서 영향을 배제
 - 기존에는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면서 환경법 위반기업에 선처, 당간부나 성장 등의 업무평가가 경제성과위주로 추진
 - 지방정부가 경제성장 및 개발정책을 우선 추진, 환경보호를 등한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강력한 수직관리제도를 “2018년까지 도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

Ⅲ. 환경감독처벌 상황 및 주요 사례

1. 중점 관리감독 업종

- '환경보호폭풍' 라 불리는 역대급 환경단속이 최근 '생산억제' 조치까지 이어짐
 - 최근 수도권 및 인근지역 지방정부가 '2017~2018 대기오염 개선 작업방안' 구체적 조치를 잇달아 발표, 주요 내용은 1) 대기오염 유발업종 생산 억제, 2) 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3) 에너지 구조개선(석탄→천연가스) 등
 - * '17년 4.5일 중국 환경보호부, 국가발개위, 베이징, 톈진, 허베이로 구성된 징진지 지역과 산둥(山東), 산시(山西), 허난(河南) 등 인근지역 6개 지방정부 공동으로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2017년 대기오염 개선 작업방안'을 발표함
 - 생산억제 대상은 전기, 시멘트, 철강, 코크스 및 화공, 전해알루미늄, 의약 및 농약 등

<수도권 및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개선 조치>

도시	조치
지난 (濟南)	겨울 난방기('17.11.15~'18.3.15.), 시멘트, 벽돌기와, 주조업, 탄소, 의약, 농약, 화력발전, 철강 등 8대 업종 생산 억제,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미달 시 "생산 정지"
탕산 (唐山)	겨울 난방기 철강과 코크스 생산 축소
쯔보 (淄博)	겨울 난방기('17.11.15~'18.3.15.) 건축자재, 철강, 주조업, 화력발전, 코크스, 전해알루미늄, 화학공업은 교대생산제*실시
허난성	철강(25개사), 코크스(23개사), 주조업(1,180개사), 건축자재(1,5720개사), 유색금속(172개사), 의료바이오(80개사) 등 6대 업종 3,060개사 교대생산을 골자로 하는 방안 의견수렴 중

자료원 :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주) 교대생산제(錯峰生產)이란 오염물 배출 피크를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생산 시간대에 생산하는 제도를 지칭

-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유발' 업종은 중점 단속 대상, 환경단속으로 가동 정지되거나 환경보호 명분하에 생산억제 조치가 내려짐.
- (전해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대량 불소화합물,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전해 알루미늄이 중점 규제대상
 - 지난 7월, 생산캐파 300만 톤에 달하는 산둥(山東) 웨이차오(魏橋), 신파(信發)그룹에 '생산정지'령을 내렸음.
 - * 웨이차오는 “2016년 산둥기업 TOP 100”에서 1위, 신파는 3위에 랭킹
 - '징진지 지역 겨울 난방기 생산억제 조치'에서는 전해 알루미늄 생산량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
- (철강) 허베이(河北)와 허난(河南)의 철강 산업은 '징진지 스모그 유발자'로서 단속 불가피
 - 허베이성정부는 올 겨울 난방기 철강생산량을 50% 축소한다는 방침, 스자좡(石家莊), 탕산(唐山), 한단 등이 중점지역으로 지목됐음.
- (코크스) 대기오염 주요 유발업종으로 이번 단속에 명단에 올랐음.
 - 지난 7월 31일, 중앙환경감찰팀이 산시(山西)에 '2015년 이전 환경보호기준 도달 요구를 제기한 코크스, 철강기업 중 1/3만 정비요구에 도달'했다고 문책
- (유색금속) 생산과정에서 폐수, 폐기물 대량 방출로 중점 단속 대상 중 하나
 - 쓰촨(四川)성 판시(樊西, 판즈화 이서)지역, 특히 판즈화(樊枝花) 바나듐-티타늄 공업단지 중 진장(金江)의 티타늄 정광 업체들은 최근 모두 생산정지된 상황, 기타 주변지역은 생산 억제 조치를 당하고 있음.
- (건축용 도자기) 환경단속으로 생산이 일시적 중단되거나 정비된 상황
 - 산둥성 쓰보(淄博)시는 올 6월 말까지 144개 건축용 도자기 생산업체의 214개 생산라인을 가동 중단
 - 10월 말까지 26개 업체의 61개 생산라인을 정비할 예정임.

- 이외에도 환경단속, 난방기 교대생산 등으로 석탄채굴, 화력발전 등은 물론, 화학공업, 제약, 인쇄 등 업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VOCs 종합관리 강화는 일반설비, 자동차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017년 수도권 및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조치로 영향 받는 산업>

구 분	과잉생산 해소	'산란오 기업' 정비	추동기 난방 관리	배출 허가증 관리	VOCs 종합 관리	난방기 교대 생산
석탄 채굴(06)			√			
피혁제조업 (1,910)		√				
가구제조(21)		√			√	
인쇄(231)		√		√	√	
석유화학(25)					√	
화학공업(26)		√		√	√	√
의약품제조(27)				√	√	√
플라스틱(29)		√				
비금속광물 (30)		√		√		√
흑색금속(31)	√			√		√
유색금속(32)		√				√
일반 설비 (34)					√	
전용 설비 (35)					√	
자동차 제조 (36)					√	
열에너지생산 (4,430)			√			
화력발전 (4,411)				√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하이퉁(海通) 증권사

주) 괄호 안 수치는 퇴출 기업 수

2. 환경단속 처벌사례

□ (사례 1) 환경영향평가서 미취득으로 인한 벌금 부과

*자료원 :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 (기업명) 中国南车集团北京二七车辆厂(중국 로컬)
- (설립연도) 1966년 7월
- (소재지) 베이징시 평타이구(豐臺區)
- (생산품목) 지하철
- (조사내용)
 - 직원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환경영향 평가 없이 시공('16년 5월), 같은 해 10월 건설 중단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위반으로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95,770위안 벌금 부과

○ (CHECK POINT)

- 최근 환경단속은 환경영향평가서 유무가 필수 점검항목임.
-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제도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심사는 보다 강화될 전망
- 따라서 기업차원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유무 자체 점검 필요함.

□ (사례 2) 환경정보 미공개로 인한 벌금 부과 / 외자기업

*자료원 :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 (기업명) 북경 S 자동차부품유한공사 (진출기업)
- (설립연도) 2003년 8월
- (소재지) 베이징시 미운구(密雲區)경제개발구
- (생산품목) 자동차 부품

○ (조사내용)

- 베이징시 중점 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지정된 모 외국계 자동차부품 업체가 관련 부처의 요구에 따라 기업 홈페이지에 환경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환경보호국이 지정한 기한 내 기업 홈페이지에 환경정보 공개, 1,000위안 벌금 부과

○ (기업의 조치내역)

- 벌금 납부, 기업 홈페이지에 환경정보 공개
 - * 중국 '기업환경정보공개방법' 제9조에 따르면 '중점 오염물질 배출 업체'는 기업 기본 정보, 오염물질 배출 상황 등을 공개해야 함

○ (CHECK POINT)

- 환경단속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안은 반드시 즉각적인 개선 조치 필요, 개선 불가의 경우 관할지 환경관련 부처에 문의하는 등 방식으로 개선의지를 보여야 함. 지적사항에 대한 '방치'와 '무시'는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중국 환경 관련 법체계는 '법률' 이외에도 관련 부처가 발표한 규정이 있음. 이러한 규정 모두 처벌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예의주시해야 함

□ (사례 3) 공익소송에 따른 행정소송

*자료원 : 현지언론

○ (기업명) H자동차 중국법인 (진출기업)

○ (설립연도) 2004년 9월

○ (소재지)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 (생산품목) 자동차

○ (환경부문 피 조사 내역)

- 중국 환경공익단체 즈란즈유(自然之友)는 H자동차(수입) 배기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소송제기. 베이징 인민법원(제4중급인민법원)은 '16년 6월 입건, '17년 7월 심리 개시
 - * '13.3.1.~'14.1.20. 중국시장으로 수입된 S 3.0 자동차의 미립자 배출량이'경형자동차 오염물 배출제한치 및 측정방법(베이징 V 단계)(DB11/946-2013) 제한치'를 초과

- 베이징시환보국은 '14년 9월 동일 사유로 H자동차의 1,351만 위안에 달하는 영업수익을 몰수하고 135만 위안 벌금(관련영업수익의 10%)을 부과
- 즈란즈유는 H자동차가 환보국 처벌 후에도 문제 차량을 리콜하지 않았으며 현재 해당 차종은 판매 중, 이로 인한 대기오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
- 즈란즈유는 1) 배출기준 미달 차량 판매 중단 2) 판매된 차량 리콜 및 수선 3) 대기오염 개선비용 부담 4) 국가급 매체를 통한 공개 사과 등 요구 제기

○ (CHECK POINT)

- 신 환경보호법 시행 후 환경공익단체가 활발히 공익소송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향후 공익소송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비 필요.

□ (사례 4) 오염물배출기준치 초과로 인한 형사처벌

*자료원 :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 (기업명) 중국 로컬 기업 B사
- (소재지) 베이징시 다싱취
- (생산품목) 아연도금처리
- (환경부문 피 조사내역)
 - '17년 6월, 다싱구 모 아연도금처리 업체가 배출한 폐수 중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 적발
 - 중금속 함량이 베이징시 '물오염 종합 배출 기준(DB11/307-2013)' 기준치의 10배 초과해 형사처벌*에 직면

- 환경오염범죄사법해석(2017년 1.1일 시행,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감찰원 발표)
 - 중금속 오염물질이 국가 또는 지방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할 경우, 중국 '형법' 제338조 '엄중한 환경오염 유발'에 해당,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음.
 - 사안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처벌형도 가능함.

- (CHECK POINT)
 - 신 환경보호법은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임. 향후 실행과정에서 환경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는 계속하여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오염상황이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관련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3. 잘한 사례와 잘못된 사례

가. 잘한 사례

□ (사례 1)

- 환경보호 기술 도입에 앞장선 베이징 A사
 - 지난 9월 4일, 인허권(陰和俊) 베이징시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감찰팀이 베이징 A사 공장의 환경보호시설 도입과 성과를 높이 평가
 - 특히 VOCs 종합관리수준이 기준치 도달은 물론, 지역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
 - 베이징 A사는 '15~'17년 현재까지 총 3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여 VOCs 종합관리수준을 크게 높여왔음
 - 환경평가를 기업인사 KPI에 도입하여 현장의 환경보호 인식을 강화하면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홍보에 도움
- A사의 환경보호 사례는 현지 언론사들에 의해 전채되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음

□ (사례 2)

- 적절한 사전대응으로 환경단속 무사히 통과
 - 유색금속 복합재신형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칭다오H전자유한공사는 환경 규제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에 각별히 주의
 - 특히 공업폐수, 공장매연 등 처리에 있어서 엄격히 법 규정에 의해 집행
 - 정책시행 후 환경당국의 검사에 적극 협조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마련하여 검사에서 큰 피해없이 무사히 통과

<환경부문 조사 내역>

- 환경영향평가 구비여부, 공업폐수 처리절차, 공장매연 처리절차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환경문제에 대한 전면검사
- * 회사 설립시 환경영향평가서 구비 여부 및 공업폐수가 공장내 오수폐기장치를 통해 지정된 도시오수관망으로 배출 여부, 제품 표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매연의 처리방식 적법 여부 등
- '17년 9월 7일 밤 현장에서 대외 배출 오수에 대한 샘플검사도 실시

○ CHECK POINT

- 최근 환경단속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서도 책임제 형식 및 환경감찰 성과경쟁제를 도입하여 향후 장기간 엄격한 환경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소재지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을 체크하여 생산전반에 걸쳐 환경 문제의 발생을 예방해야 함

□ (사례 3)

- 즉각 개선조치를 취해 가중처벌을 면한 오수처리장
 - 항저우 푸양 오수처리장(杭州富阳新盈嘉水务有限公司)은 '17년 1월 환경단속 과정에서 생산정지 처벌, 벌금 200만 위안을 부과받았음.
 - 오수처리장은 환보국의 요구에 따라 15일 내 환경정비대안을 작성하여 환경국에 보고, 정비대안 내용 중에는 개선조치, 공사진도, 자금보장과 책임자 등을 명시하는 등 개선의지를 보였음.
 - 1개월 후 해당 오수처리장은 환보국에 생산회복 요청, 환보국은 재검검 결과 표준에 부합된 것을 확인 후에 생산회복에 동의함

○ CHECK POINT

- 환경당국의 정책에 따른 감독표준 지표 파악 필수
- 환경단속 결과에 따라 즉각 개선 조치가 필수이며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관계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개선의지'를 어필할 필요가 있음.

나. 잘못된 사례

□ (사례 1)

- 중국 환경보호 기조에 반발했다가 언론의 못매 맞은 다국적 기업
 - (당사자)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그룹 독일 셰플러(Schaeffler)와 중국 로컬기업 제룽(界龍), 상하이 푸둥구 환경보호국, 중국 환경보호부 등

<사건 경위>

- ☞ (9월 14일)셰플러는 상하이 푸둥(浦東)구 환보국에 ‘긴급구조요청서’ 발송
 - 셰플러에 니들을 납품하는 제룽사가 환경단속으로 생산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제룽사의 납품중단은 셰플러 부품공급체인 가동 중단을 초래했다고 주장
 - 이번 사태로 인해 49개 사의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고 9월 19일 생산이 전면 중단될 것이며 자동차 생산량이 300만 대 감소하고 약 3천억 위안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 이미 ‘전기, 물공급을 중단’한 제룽사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청
- ☞ (9월 18일)상하이 푸둥구 환보국은 “환경보호강화는 역행 불가의 추세”라며 “제룽사는 환경보호 강화를 진행한 최근 9개월 동안 셰플러와 생산라인 재정비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
 - 제룽사는 지난해 12월, 올 3월 총 2차례나 환보국의 정비 및 개선 지시를 받았음.
- ☞ (9월 20일) 중국 환경보호부는 SNS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생산라인 조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업이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
- ☞ (9월 21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중국 환경보호 추세에 반기를 드는 다국적 기업과 환경보호 부처에 개선요청을 무시한 로컬 기업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
- ☞ 최근 중국 언론사들은 제룽사는 물론 생산라인 다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글로벌 기업 셰플러에 대한 비판여론 쇄도

○ (CHECK POINT)

- 최근의 환경단속은 '의법환보(법에 의거하여 환경을 보호)' 추세 이므로 사회여론의 동정을 얻기보다 '법에 의해 개선조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임
- 환경보호는 중국의 국책으로 승격됐으며 환경보호부를 비롯한 각급 환경 관련 부처는 환경단속에 혈안이 된 상황임.
- 중국의 여론특성 상, 국책 기조에 반기를 드는 기업, 특히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동정보다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서 여론의 못매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사례 2)

- 환경단속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일수별 벌금부과형(按日连续处罚)을 받음
 - (당사자) 상하이에서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로컬기업

<사건 경위>

- ‘상하이시 환경보호조례’는 오수가 땅속에 스며들도록 만든 웅덩이나 빗물배출구 등 감독관리를 피해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영자는 벌금처벌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령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당일부터 일수대로 계산하여 처벌할 수 있음
- 해당 업체는 빗물배출구를 통해 오염수를 배출했으며, 환경보호부처로부터 12만 위안의 벌금을 처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아 미시정 일수별로 누적하여 처벌받음
- 아울러 ‘건설항목 환경보호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 해당 건설항목에는 함께 구비되어야 하는 환경보호시설이 마련되지 않았고, 미검수 혹은 검수 불합격에도 생산을 개시하는 등 위법행위가 포착됨
- 이에 환경보호부처는 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고, 시정하지 않아 추가로 누적됨

○ (CHECK POINT)

-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환경보호 분야에 집중,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관련 부처에 권한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만큼, 환경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 ②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규정과 행정조치, 장려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 ③ '17년 9월 15일까지 8개 중앙환경보호 감찰조직은 감찰작업을 완료, 31개 성시의 감찰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이후에는 특정분야 전문감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4. 환경 규제 관련 FAQ⁵⁾

□ 환경영향평가 관련

Q1 :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공장 설비를 증설하게 되었음. 공장 설비를 증설하면 그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A1 : 공장 설비를 증설하거나 공정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함

Q2 : 최근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환경영향평가 관련 비용이 폐지되어 무료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사실인지?

A2 : 중국정부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보고표, 등기표 등의 작성관련 비용 상한선을 규정했으나 금년 10.1일부터 동 규정이 폐지됨. 즉 보고서, 보고표, 등기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징수하던 행정비용이 전면 폐지된 것이 그러한 루머로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Q3 : 현재 공장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받았는데 만약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같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A3 :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공장에서 배출하는 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평가하는 것이므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함.

□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오염물질 처리 설비 구비 관련

Q4 : 당사는 전자제품 조립회사이며 제조 공정 중 납땜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 처음에는 덕트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처

5) 동 FAQ 자료는 주중대사관 환경관의 업체 상담내용을 게재한 것임

리하다가 지금은 그마저 철거한 상태인데 이 경우 환경감찰에 지적될 수 있는지 ?

A4 : 중앙환경감찰대가 검사를 나오면 새로운 집진설비를 설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검사 전이라도 반드시 오염물질 처리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특히 납땀이 이루어지는 곳에 개별적으로 방진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Q5 : 당사는 가구제조업체임. 가구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물로 용해시켜 처리하고 있는데, 폐수 처리 시 건조 후 잔여성분을 공기 중으로 배출시킬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신고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 현재 냄새나는 물질을 태워 내보내는 설비를 설치 중인데 설치 완료 후 검수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탄소리를 하지 않을까 우려됨

A5 : 지방정부 감찰대는 자체 기준이 없어 설비 설치 요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환경감찰대가 요구한 설비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Q6 : 당사는 얼마 전 생산현장에 활성탄 방식의 집진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중국 공무원이 기존 시설을 없애고 다른 설비를 설치하라고 하는바, 중국 공무원이 특정 방식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A6 : 중국 공무원이 특정 방식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존 설비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장비가 아닌 새로운 장비를 요구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Q7 : 공장에서 발생시키는 물질이 무색, 무취로 대기오염물질이 아닌 경우에도 단속대상에 포함되는지?

A7 : 대부분의 물질은 열을 가했을 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오

염물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전문기관이 오염물질 배출을 확인하였거나 중국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함

□ 배출 허가증 제도 관련

Q8 : 시멘트 업종 폐수처리허가증 발급 시 배출되는 폐수의 양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A8 : 폐수처리허가증 제도는 금년에 시멘트 업종에 처음 적용된 것이며 향후 의약품이나 농약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은 폐수처리허가증 심사 시 성·시·자치구별로 자체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을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오염물질 총량규제제도,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임

□ 환경오염방지 설비 구비 관련 지원제도

Q8 : 중국정부 혹은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진출 우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혹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는지

A8 : 중국정부의 요구에 의해 이전하는 경우 우리기업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이전요구에 직면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한국 환경부에 최근 중국정부의 환경감독 강화에 따른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함

□ 전기 및 가스보일러 교체 관련

Q9 : 당사는 중앙환경감찰대로부터 당사 공장에서 사용 중인 경유보일러

러를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 경우 중앙환경감찰대가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지?

A9 : 중국정부가 최근 환경감찰을 강화하면서 경유보일러의 경우 10톤 이하의 소형은 전부 퇴출, 10톤 이상의 중대형은 전기보일러 혹은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요구는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이므로 교체 혹은 철거 요구를 받은 기업은 반드시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함

Q10 : 해마다 동절기에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 나무를 소각하는 방식의 난로를 가동해왔는데 이와 같은 설비도 환경감찰에 지적될 수 있는지 ?

A10 : 중국은 환경감시위성이 발달돼 있어서 도심이나 공장지역에서 나무를 소각할 경우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위성감시에 적발되는 즉시 중국 환경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으므로 해당 설비는 전기보일러나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아예 철거해야 함

□ 환경감독 기업에 대한 조치 관련

Q11 : 중국정부가 환경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베이징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A11 : 중앙환경감찰대는 환경오염기업을 ①폐쇄, ②기한 내 개선, ③오염방지시설 업그레이드, ④이전(移轉) 등으로 분류하여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를 내리고 있음. 특히 '이전' 조치의 경우 지방정부가 오염물질을 종합처리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업들을 동일업종으로 묶어 입주시킬 가능성이 있음

Q12 : 지난 8월 쓰보 지역에 중앙환경감찰대가 환경감찰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또 다시 환경감찰이 실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바 이러한 소문이 사실인지?

A12 : 중앙정부는 정기감찰과 특별감찰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실시한 환경감찰은 정기감찰에 해당하며 주로 지방정부 관리를 대상으로 감찰을 시행했음. 조만간 시행될 감찰은 특별감찰로서 환경부와 공안부가 공동 감찰에 나서는 것으로서 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체를 감독하기 위한 것임

Q13 : 회사가 사용하는 전자용해로에 중국정부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정부의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A13 : 중국정부가 설치하려는 것은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측정모니터링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음. 동 시스템은 법적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이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전망 및 대응방안

□ (전망) 중국의 환경감독이 상시화되고 환경보호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新 '환경보호법' 실시를 기점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환경규제 대폭 강화
 - . 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받는 新 '환경보호법'은 '89년도의 환경보호법의 40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늘어났으며, 처벌수준 또한 대폭 확대됨
 - . 신환경보호법('15.1.1) 하에 대기오염방지법('16.1.1),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15.4.2),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05.4.1),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16.5.31) 법률 등을 개·제정하여 환경규제 강화 기틀 마련
- 2016년~2017년 간 진행되고 있는 환경점검에 따른 폭발적인 처벌 건수가 그 실례를 보여주고 있음
 - . 2016년 1년 간 환경보호 위반으로 전국적으로 9,976개의 공장이 폐쇄 및 압류됨
 - . 2017년 상반기 징진지(京津冀)지역 환경보호 위반 기업이 전체의 2/3인 17만 6천 여 개사로 엄격한 감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향후 환경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 기조중 하나로 관련 법률 등에 기초하여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 중국기업, 외국기업 상관없이 모두 조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단속은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 뿐만 아니라 중국내 산업구조 재정비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치로서도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 (대응방안)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 및 단속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중장기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
 - (상시) 중국의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제 내용을 수시 모니터링해서 환경 리스크 발생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필요
 - . 중국 현지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 변화 추이 및 환경부처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환경감독 상황 수시 체크 필요
 - . 특히 향후 환경규제가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차원에서 환경 전문가를 지정하여 유사업체의 대응 방법 등을 지속 모니터링 및 관리 필요
 - (사전) 중국 정부의 환경단속 시행 전 자체 사전 점검 및 환경관련 설비 적시 구비 필요
 - . 환경보호법, 대기오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보호세법 등 환경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폐수, 폐기가스, 오염물질 방지 배출시설 사전 구비
 - . 환경규제 대응 체크 리스트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 대응 필요
 - (사후) 환경부문 지적을 받거나 적발됐을 경우 적극적인 개선 및 조치 필요
 - . 현지 당국으로부터 환경부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대처 필요
 - . 환경위반의 경우, 기한내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단수, 단전, 생산중단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 환경규제의 준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자 지속가능 경영의 필수조건으로 위반시에는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향후 중국 환경단속 대응방안>

- ① 공장 신설/증설 시 토지등기증 및 건물등기증(방산증)을 적법하게 확보해야
 . 최근 중국의 환경단속은 환경오염에만 집중하는 것이라 단속 시 각종 허가증 유무를 점검
- ② 영업업종이 중국의 산업정책이나 지방정부의 규획에 맞는 업종인지 등을 확인
 . 베이징은 '17년 7월 '2017년판 베이징 퇴출업종 리스트'를 발표하여 즉각 퇴출, 신축 확장 불가 업종 등을 명시
- ③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받아야 함.
- ④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시설투자를 해야 함.
 . 특히 최근 중국이 요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투자에 유의해야 함.
- ⑤ 환경관리전담 직원 또는 고문을 두어 법, 제도 강화내용과 감찰내용 등 정보를 획득해야 함.

- (친환경산업 진출 기회) 환경규제 리스크를 우리기업의 중국 환경산업 진출 기회로 활용
 - . 중국은 강력한 환경규제를 통한 제조업 중심 경제의 구조조정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으로 환경부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 '12.5 계획'에 이어 '13.5계획',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도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 실시 표방
 - . 특히 ▶ 도시/농촌 오수 처리시장 ▶ 탈황, 탈질산 시장 확대 ▶ 청정 에너지 및 신에너지 산업 ▶ PPP 활용한 환경부문 프로젝트 등 4개 영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향후 중국 환경부문 투자 전망>

- ① 도시/농촌오수 처리 시장 확대
 - . 2015년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10条) 발표로 신규 오수 처리 및 기존 오수처리 시설 공정이 지속 진행 중
 - . '13.5' 계획기간 도시 및 농촌 오수시설에 총 5,829억 위안 투자 예상
- ② 탈황, 탈질산 시장 지속 확대, 설비제조 및 기술 업그레이드 투자 낙관적
 - . 2015년 중국의 탈황, 탈질산 업종 규모 900억 위안을 넘어섬
 - . 중국 대기오염 법규기준이 갈수록 엄격, 향후 5~10년 간 시장규모 연평균 10% 이내 증가, 중국 환경보호 장비제조업 연평균 20% 증가율 유지
- ③ 청정 에너지 및 신에너지 등 산업 발전 낙관적
 - . 중국 정부는 2017년까지 매탄의 에너지 소비 총량 비중을 65% 이하 감축기로 계획
 -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감의 동시 효력을 볼 수 있는 청정 에너지 및 신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임 ('12.5'/'13.5' 계획 주요 육성산업)
- ④ PPP 활용한 환경부문 프로젝트 활성화
 - . 중국 정부의 현행 우대정책 활용 및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리스크 경감 등 사업 성공 창출 가능성이 큼

<부록1>

<2017년 10월~2018년 3월 '2+26'도시 공기질량 개선 목표>

도시	PM2.5 평균농도		중오염 날씨 일수	
	전년대비 감소비율(%)		전년대비 감소비율(%)	
베이징시(北京市)	25		20	
톈진시(天津市)				
스자좡시(石家庄市)				
신지시(辛集市)				
탕산시(唐山市)	22			
한단시(邯鄲市)	20		18	
싱타이시(邢台市)				
바오딩시(保定市)	22		20	
송안신구(雄安新區)				
딩저우시(定州市)				
창저우시(滄州市)	18		15	
랑광시(廊坊市)				
형수이시(衡水市)				
타이위안시(太原市)	25		20	
양취안시(陽泉市)	15		15	
장즈시(長治市)	10		10	
진청시(晉城市)				
지난시(濟南市)	18		15	
즈보오시(淄博市)	15			
지닝시(濟寧市)	10		10	
더저우시(德州市)	15		15	
랴오청시(聊城市)				
빈저우시(濱州市)				
허저시(荷澤市)				
정저우시(鄭州市)	20			
궁의시(鞏義市)				
항공신구(航空新區)				
카이펑시(開封市)	10		10	
란카오현(蘭考縣)				
안양시(安陽市)	20		18	
화현(滑縣)				
허비시(鶴壁市)	18		15	
신상시(新鄉市)	15			
창위안현(長垣縣)				
자오주어시(焦作市)	18			
푸양시(濮陽市)	15			

<부록2> 환경규제 대응 체크 리스트

구분	리스크	위반유형	위반행위유형 / 법적 요구사항	감독기관
환경일반	3동시(환경보호시설은 주체건물(主体建筑)과 동시설계, 동시건설, 동시사용)의 무	3동시의무 규정을 위반	환경보호시설은 주체건설과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관련 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됨	환경보호 부서
환경일반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무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대한 감독당국 허가 미취득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건설항목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건설항목환경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항목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오염방지조치를 제정하여야 하며,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시공할 수 있음	환경보호 부서
환경일반	오염방지시설 관련 위반행위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검수를 거치지 않은 사용	오염방지시설은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기 이전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하며 환경보호관련 요구에 부합됨을 확인 받은 후 생산에 투입, 운영 가능함	환경보호 부서
환경일반	손해배상책임	운영 장소에서 오염물질 배출하여 제3자 손해 초래	운영 장소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함	법원
환경일반	검측설비 운영 및 검측기록 보관	검측설비 운영 및 검측기록 보관 의무 위반	중점오염배출업체는 오염물 배출 검측설비를 설치해야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원시적 기록을 보관해야 함	환경보호 부서
환경일반	오염배출 공개의무	중점오염배출업체의 정보 공개의무 미이행	중점오염배출 중점업체는 사회적으로 주요 오염물의 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와 총량, 기준초과 방출 상황을 사실대로 공개해야 함	환경보호 부서
환경일반	오염물 배출 허가증 취득의무	오염물 배출 허가증 미취득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업체는 허가증 상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고,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오염물을 배출할 수 없음	환경보호 부서

환경일반	낙후설비 사용금지	낙후설비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생산 공법(生産工藝), 설비와 제품을 생산,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아니 됨	
환경일반	응급조치 제정의무	응급조치 제정의무 위반	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응급상황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환경보호부서에 등록해야 함	환경보호부서
환경일반	환경검측 관련 의무 위반	검측의무 미 이행	오염물질 배출자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문의 요구와 국가환경검측기술규범에 따라 배출상황에 대한 자체검측을 진행해야 함	환경보호부서
환경일반	오염원 자동제어장치 관련 위반행위	제어장치 및 설비 미설치	오염원 자동제어계획에 열거되어 있는 오염물질 배출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자동제어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 설치해야 함	환경보호부서
환경일반	오염원 자동제어시설 관련 위반행위	제어시설의 부당 사용	오염물질제어시설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제어시설을 임의로 철거, 방치, 파괴함. 예컨대, ① 자동제어설비를 조작하는 자가 관련 자격증을 구비하지 아니함; ② 설비의 사용, 운영, 유지가 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아니함; ③ 정기적으로 비교검측하지 아니함; ④ 운영상황에 대해 기록하지 아니함; ⑤ 설비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데이터 수집, 전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기에 보수하지 않고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작성한 데이터를 송부하지 아니함; ⑥ 자동제어시설운영자격을 갖추지 못한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함	환경보호부서
환경일반	청결생산 관련 위반	주요 오염물질배출내역 미 공표	청결생산심사가 강제되는 기업은 정부에서 기업명단을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소재지 주요 매체에 주요오염물질배출상황을 공개하여야 함. 공개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기업명칭, 법인대표, 주소, 배출하는 오염물질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 및 총량, 기준/총량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임 청결생산심사가강제되는기업은구	환경보호부서

			<p>체적으로아래와같음:</p> <p>①오염물배출관련국가및지방정부에서정한배출기준을초과하거나오염물질배출총량이지방정부에서정한배출총량제한기준을초과하는오염중점대상기업</p> <p>②유독유해원료를사용하여생산에종사하거나생산과정에서유독유해물질을배출하는기업</p> <p>유독유해원료 또는 물질이라 함은 <위험물품목록>,<위험화학물질목록>,<위험폐기물목록>,<유독화학물질목록>중독성이강하고,강부식성,강자극성,방사성(핵발전 시설 및 군용 핵시설 미포함),암이나기형유발 등 물질을 말함</p>	
환경일반	청결생산 관련 위반	청결생산심사 미진행	강행적으로 청결생산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청결생산 심사를 진행해야 함.	환경보호부서
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위반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 배출	국가에서 반포하는 <대기오염물질종합배출기준(大氣汚染綜合排放標準)>에 정한 허용기준이나 지방정부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함.	환경보호부서
대기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무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무 위반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문서를 공개해야 함	환경보호부서
대기	오염물 배출 의무	오염물배출의무 위반	대기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중점대기오염물 총량통제 요구를 준수해야 함	환경보호부서
대기	오염방지시설 관련 의무	대기오염물 처리시설 관련 의무 위반	회사는 별도 대기오염물 배출구를 설치해야 하고, 무단 배출, 검측 데이터 왜곡 및 위조, 현장 검사를 기피하여 임시 생산정지, 긴급 상황 대비 응급 배출구 개방,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 대기오염물 배출 감시감독을 회피하는 행위는 금지됨	환경보호부서
대기	오염물 배출 검측의무	오염물 배출 검측의무 위반	중점오염배출 업체는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 관리감독설비를 설치·사용해야하며,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관리 통제 설비와 연결망을 구축해야하고, 검측 설비 정상운동을 보장하고 배출 정보를 공개해야 함	환경보호부서
대기	검측시설 유지의무	검측시설유지 의무 위반	대기환경질량 검측 시설 및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 검측 설비의 불	환경보호부서

			법 적용, 훼손, 독단적인 이동 및 개조를 금지함	
대기	금지 공법, 설비 사용 및 제품 생산 금지	금지 공법, 설비 사용 및 제품 생산 금지 위반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공법, 설비 및 상품 등은 도태기한을 정하고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반드시 규정기한 내에 설비 및 상품의 생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정지해야 함.	환경보호부서
대기	도장운영업체 의무	도장운영업체 의무 위반	공업도장 운영업체는 저휘발성 유기물을 함유한 도료를 사용해야 하고 원자재, 보조료 사용, 폐기물의 양, 행방(去向), 휘발성 유기물 함량을 기록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함	환경보호부서
대기	건설업체(建設單位) 의무	건설업체 의무 위반	먼지방지(防治揚塵) 비용을 공사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고 시공계약에 먼지방지 책임을 명시해야 함	환경보호부서
대기	시공업체 의무	시공업체 의무 위반	1) 관련된 먼지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2) 시공현장에 먼지방지조치, 책임자, 감독관리부서를 게시해야 함. 3) 시공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지면을 덮어야(覆蓋)하고, 3개월 이상 시공을 중단하는 경우 녹화를 해야 함	환경보호부서
소음	소음방출 허용기준위반	소음방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소음 방출	도시범위 내 주변 환경에 대해 국가에서 정한 <공업기업공장주변환경소음배출기준(工業企業廠環境噪聲排放標準)>을 초과하여 소음을 방출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업무 및 교육에 영향을 미침. *공장주변환경소음방출기준 낮:50~70db(A) 야간:40~55db(A)	환경보호부서
소음	소음방지시설 관련 위반행위	소음방지시설의 미검수 운영	소음방지시설은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기 이전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하며 국가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어야만 생산에 투입, 운영 가능함	환경보호부서
소음	소음방지시설 관련 위반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소음방지시설의 철거, 방치	소음방지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환경보호부서
소음	소음방지시설 관련 위반행위	소음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음 배출	소음오염을 발생하는 공업기업은 주위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경감할 수 있도록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환경보호부서
소음	소음방지시설	감독당국의	소음민감건축물집합지역(噪聲敏感	환경보호

	관련 위반행위	개선명령 미이행	建築物集中區域) 내에서 중대한 환경소음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지 못함. '소음민감건축물'라 함은 병원, 학교, 정부, 연구개발업체, 주택 등 안정유지를 요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소음민감건축물집합지역'이라 함은 의료지역, 문화교육과학지역 및 정부나 주민주택이 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함	부서
소음	소음배출신고 및 허가의무 위반	배출시설 미신고	공업생산과정에서 고정설비를 사용하여 소음오염을 조성하는 기업은 소음오염을 초래하는 설비의 종류, 수량 및 정상적인 작업환경하에서 배출하는 소음수치 및 소음방지시설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음방지에 관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소음배출설비의 종류, 수량, 소음수치 및 방지시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상응한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함	환경보호부서
소음	소음배출신고 및 허가의무 위반	허가 없는 우발성 강렬소음 배출	도시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우발적인 강렬한 소음을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공안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공안당국은 이를 공고함. 우발적인 소음은 지속시간이 보다 짧고 강도가 높은 소음을 말하며, 예컨대 보일러기체배출, 공사 중 폭발 등 보다 강렬한 소음임	환경보호부서
소음	소음오염원 관련 위반	중대한 오염 유발 설비의 생산, 판매, 수입	국가에 반포하는 생산, 판매, 수입을 금지하는 중대한 소음오염을 유발하는 설비목록 내 설비에 대해서는 생산, 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	환경보호부서
소음	소음오염원 관련 위반	야간작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시공	도시 내 소음민감건축물집중지역에서는 야간에 환경소음오염을 발생시키는 시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다만, 시급한 보수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산담당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특수필요에 의하여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함. 특수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당국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야간작업은 주변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함. '야간'이라 함은 저녁 22:00 부터 새벽 6:00까지의 기간을 말함	환경보호부서

소음	조사거부	감독당국의 조사 거부 또는 방해, 허위 자료 제공	감독당국의 감독조사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진실된 상황을 반영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함	환경보호부서
수질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위반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규정하는 <수질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함	환경보호부서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의무 위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배출시설 설치	강, 호수에 배출구를 설치, 개조,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환경보호부서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의무 위반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	국가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지역에 배출구를 설치함. 구체적으로, ①식수자원보호구역내에배출구를 설치함 ②정부에서지정한풍경유람,중요어업및기타특수경제문화가치가있는수자원보호구에배출구를신설함 ③법률,행정법규및감독당국에서제정한규정을위반하여배출구를설치함	환경보호부서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의무 위반	배출시설 등의 미신고	직간접적으로 수자원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나 개인은 감독당국에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처리시설, 정상적인 작업환경 하에서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농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방지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및 농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환경보호부서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의무 위반	수질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미검수 사용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감독당국의 검수를 득하지 아니하여 또는 검수에 합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함	환경보호부서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의무 위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수질물질처리시설 철거, 방치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환경보호부서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의무 위반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부당 사용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을 부당하게 사용함. '부당사용'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함: ①일부또는전부의오수또는기타오염물질을처리시설을통해처리하지않은상태에서배출하는경우 ②은폐적으로배출하는방식으로오수나기타오염물질을처리하지않은상태에서배출하는경우	환경보호부서

			<p>③ 긴급상황이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처리시설의 응급배출밸브를 열어 일부 또는 전부의 오수 또는 기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p> <p>④ 처리하지 아니한 오수나 기타 오염물질을 오염물처리시설의 중간 process에서 빼내어 배출하는 경우</p> <p>⑤ 일부 오염물질처리시설을 단기는 장기적으로 운영 중단한 경우</p> <p>⑥ 조작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처리시설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p> <p>⑦ 오염물처리시설에 고장이 발생한 후에도 제때에 또는 조작규정에 따라 검사, 보수하지 아니하여 처리시설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p> <p>⑧ 오염물처리시설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경우</p>	
수질	배출허가 및 행위 관련 무 위반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배출	직간접적으로 수자원에 공업폐수, 의료폐수 및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취득한 후 폐수, 오수를 배출하여야 하는 업체가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가증상 내용을 위반하여 폐수, 오수를 배출함	환경보호부서
수질	배출허가 및 행위 관련 무 위반	부당한 방법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사적으로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감독을 회피하는 기타 방식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 '감독을 회피하는 기타 방식'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포함함: ① 폐수를 희석하여 배출함 ② 폐수를 탱크자동차, 저장탱크 등 운송도구나 용기를 이용하여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이전하거나 불법배출함 ③ 우수와 오수 파이프 망 분리 후 우수 파이프 망을 통해 폐수를 배출함 ④ 기타 임의로 오수 처리 방식을 변경하여 법정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등 감독을 회피하는 행위	환경보호부서
수질	측정기기 관련 부당행위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기 미설치	정부에서 수질오염물질배출자동측정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하는 <u>중점오염업체명부(重点排污单位名录)</u> 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수질오염물질배출자동측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 중점오염업체명부는 시급이상(구로 구분되어 있는 시) 정부환경보호주관	환경보호부서

			부문에서 행정구역내 환경용량, 중점수질 오염배출총량 제어표준의 요구 및 배출회사의 배출물질의 종류, 수량, 농도 등 요소에 따라 동급수질 행정주관 부문과의 협의하에 확정	
수질	측정기기 관련 부정행위	감독당국의 감독망에 측정기기 연결사용 의무 미이행	측정기기는 감독당국의 감독감시망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음	환경보호부서
수질	측정기기 관련 부정행위	측정기기의 비정상적 작동 초래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게 함	환경보호부서
수질	측정기기 관련 부정행위	측정의무 미이행 및 측정결과 미보존	공업폐수를 배출하는 자가 그가 배출하는 공업폐수에 대해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함. 측정항목에는 pH, TOC, 암모니아, 유류, 부유물 및 산업별 특정오염물을 포함하고 있음.	환경보호부서
수질	배출총량제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초과 배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규정하는 <주요수질오염물질배출총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함. 중점물 오염배출총량지배표준은 <주요물오염물질총량배당지도의견(主要水汚染物總量分配指導意見)>을 따름	환경보호부서
수질	수질오염원 관련 위반	특정물질 배출	수자원에 대해 배출이 금지된 특정물질을 배출함. 구체적으로 ①기름, 산성액체, 알칼리성액체 배출. ②공업폐기물, 도시쓰레기와 기타 폐기물 배출, 강, 호수, 운하, 수로, 댐 최고 수위선 이하의 모래사장, 강변에 고체 폐기물과 기타 오염물 저장. ③침투방지조치가 없는 수로, 저수지를 이용하여 유독, 병원체 포함된 오수와 기타 폐기물 배출 ④유독 폐액 배출. 가용성 독성 강한 폐기물 배출, 방수, 침투방지, 유실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⑤수체에 방사성 고체 폐기물 또는 고방사성, 중방사성 물질 포함 폐수 배출. ⑥우물, 갭, 틈, 중유 등을 이용한 유독, 병원체 포함 오수와 기타 폐기물 배출. ⑦국가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뜨거운 폐수, 저방사성 물질 포함된 폐수, 병원체 포함 폐수나 기타 폐기물 배출. ⑧수자원에 기름, 유독 오염물질을 저	환경보호부서

			장했던차량또는용기를세척함	
수질	응급조치 관련 위반	수질오염사고 응급방안 미 제정	수질오염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수질오염사고응급방안을 제정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훈련하여야 함	환경보호 부서
수질	응급조치 관련 위반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통지의무 미이 행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돌연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환경보호 부서
수질	수질오염물질 배출부담금 관련 위반	수질오염물질 배출부담금 미납	직접 수자원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에 오수를 배출하고 오수처리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배출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환경보호 부서
수질	조사거부	감독기관의 조사 거부 또 는 허위자료 제출	정부당국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함	환경보호 부서
수질	수질오염으로 인한 행정제재	수질오염 초 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받아야 함	환경보호 부서
수질	중수도 관련 위반	중수도 미설 치	도시규획 내에서 기존건축물이 현재 중수도시설 건설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건물주는 중수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함	환경보호 부서
수질	공공하수도 관련 위반	도시 하수도 망 및 부속시 설 범위내 업 체의 해당시설 미이용	도시 하수도망 및 부속시설이 있는 배수구역 안의 배수업체는 도시배수규획 등 관련 요구에 따라 오수를 공공하수도 및 그 부속시설에 유입시켜야 함	환경보호 부서
수질	공공하수도 관련 위반	공공하수도 사용허가 미취 득	배수업체가 도시 공공하수도 및 그 부속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감독당국에 신청하여 배수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환경보호 부서
수질	절수시설 관 련 위반	절수시설 미 건축	도시에서 건설공사를 신축, 개조 및 확장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절수시설을 함께 건축하여야 함	환경보호 부서
수질	지하수개발 관련 위반	허가를 득하 지 않은 지하 수 개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취수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함	환경보호 부서
수질	지하수개발 관련 위반	허가범위를 초과한 지하수 채취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지하수를 채취함	환경보호 부서
수질	수자원이용부 담금 관련 위 반	수자원이용부 담금 미납	직접 강, 호수 또는 지하로부터 수자원을 채취하는 자는 감독당국에 수자원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	환경보호 부서

			야 함. 다만, 가정생활, 가축음수 등 소량취수의 경우 제외	
토양	토양오염책임	토양오염 유발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고체폐기물 처리 관련 위반	법률상 허용된 시설이 아닌 곳에 고체폐기물 투척 또는 적치	강, 호수, 운하, 하천, 저수지 및 이들 수자원의 최고수위선 이하의 갯벌 및 주변 등 법률, 법규에 고체폐기물을 버리거나 쌓아두어서는 아니되는 장소에 고체폐기물을 버리거나 쌓아둠(액체폐기물의 경우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적용함. 다만, 수자원에 배출하는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수질오염방지 관련 법률을 적용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고체폐기물 처리 관련 위반	고체폐기물의 오염방지조치 미이행	①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고체폐기물이 환경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거나 감소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②고체폐기물을수집,보관,운반,이용,처리하는자는확산,유실,침투방지조치또는환경오염을방지하는기타조치를취하여야하며,임의로고체폐기물을버리거나적치해두어서는 아니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고체폐기물 처리 관련 위반	고체폐기물 회수의무 미이행	법률규정에 의하여 강제회수목록(強制回收目録)에 포함된 제품 및 포장재를 생산, 판매, 수입하는 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제품 및 포장재를 회수하여야 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고체폐기물오염방지시설 관련 위반	고체폐기물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미검수 사용	환경평가문서에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건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감독당국의 검수를 득하지 아니하여 또는 검수에 합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체폐기물오염방지시설을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포장시 기준 위반	포장 관련 기준 미준수	정부가 과도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포장기준을 위반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제조, 설계시 요구 위반	제조, 설계 관련 요구 미준수	제품 및 포장재의 설계, 제조는 국가의 관련 청결생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조사거부	감독기관의 조사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	정부당국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환경오염초래	환경오염 초래	고체폐기물에 의한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오염사고 초	고체폐기물에 의한 오염사고가	환경보호

		래	발생함	부서
폐기물	공업폐기물 처리 관련 위반	공업폐기물에 대한 신고, 변경신고 미이행	공업고체폐기물배출자는 감독당국에 공업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이동경로, 보관, 처분 등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한 사항 중 증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음	환경보호 부서
폐기물	공업폐기물오염방지시설 관련 위반	분리보관, 무해화 조치 미이행	기업은 경제, 기술여건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업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재활용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장소를 건설하여 안전하게 분류보관하거나 무해화조치를 취하여야 함. 저장, 처리장소, 시설은 국가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국가환경보호표준은 <일반공업고체폐기물저장, 처리장소오염제어표준(一般工業固体廢物貯存、處置場汚染控制標準)>을 따름	환경보호 부서
폐기물	공업폐기물오염방지시설 관련 위반	공업폐기물오염방지시설 사용종료 시 미신고	공업폐기물 오염방지시설, 장소를 임의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할 수 없으며, 그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환경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함	환경보호 부서
폐기물	재활용의무 관련 위반	재활용의무 미이행	기업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분진, 폐석, 폐석, 폐료, 폐기 등 공업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야 함	환경보호 부서
폐기물	일정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 관련 위반	전자제품 제조업자의 일정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 미준수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업자는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나 규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 또는 설비에 유독유해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시켜야 함. 해체,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할수있는 전자전기제품은 국가에서 정한 유독유해물질목록(有毒有害物質名錄)내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환경보호 부서
폐기물	공표의무 위반	전자제품 제조업자의 관련 정보 미공표 또는 미게시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설비에 함유된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PBB, PBDE 등 유독유해물질을 공표하고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환경 및 신체건강에 줄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며, 제품 또는 설비 폐	환경보호 부서

			기 후 환경무해화방식으로 이용 또는 처분하는 방식을 게시하여야 함	
폐기물	회수의무 위반	전제품 제조업자의 폐기 전자제품 회수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제품이나 설비를 회수하고 환경무해화방식으로 보관, 이용 또는 처분하여야 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전자폐기물처리 위탁 관련 위반	전자폐기물처리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미진행	공업전자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환경무해화방식으로 해체, 이용 또는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전자, 전기제품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사용자, 유지보수업자, 제조업자가 폐기처분하는 전기, 전자폐기물은 국가에서 정한 지정업체목록에 규정한 상응한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해체/이용/처리업자에게 해체, 이용 또는 처리를 위탁하여야 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전자폐기물처리위탁 관련 위반	전자폐기물처리상황 기록 및 보존의무 미이행	공업전자폐기물배출자는 발생하는 전자폐기물의 종류, 중량 또는 수량, 그리고 직접 또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폐기물을 보관, 해체, 이용, 처리한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당국에 전자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이동경로, 해체, 이용, 보관,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기록자료 보관기간은 3년임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위험폐기물처리 관련 위반	위험폐기물에 대한 신고, 변경신고 미이행	위험폐기물배출자는 위험폐기물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감독당국에 위험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이동경로, 보관,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위험폐기물관리계획에는 위험폐기물발생량 및 위해성 감소조치, 위험폐기물 보관, 이용, 처리조치를 포함하여야 함. 위험폐기물관리계획은 감독당국에 신고 등록하여야 함. 신고 사항이나 위험폐기물관리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이와 같음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위험폐기물처리 관련 위반	돌발사고 방범조치 및 응급방안 미작성	위험폐기물을 배출, 수집, 보관, 운반, 이용, 처리하는 자는 돌발사고 방범조치 및 응급방안을 작성하여 감독당국에 신고 등록하여야 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위험폐기물	정부당국의	위험폐기물배출자는 국가의 관련	환경보호

	처리 관련 위반	위험폐기물 처리요구 미이행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버리거나 쌓아두어서는 아니됨	부서
폐기물	위험폐기물처리 관련 위반	위험폐기물처리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미진행	위험폐기물은 위험폐기물운영허가증을 취득한 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보관, 이용,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위험폐기물 표시 관련 위반	위험폐기물 용기, 포장, 취급시설, 장소에서의 위험폐기물에 관한 표시의무 미이행	위험폐기물 용기 및 포장재 그리고 위험폐기물을 수집, 보관, 운반, 처리하는 시설, 장소에 대해서는 위험폐기물식별표시를 하여야 함. '위험폐기물'이라 함은 국가에서 정한 '위험폐기물목록'에 포함된 폐기물을 의미함	환경보호부서
폐기물	응급조치 관련 위반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통지의무 미이행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돌연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위험물질이 중대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 지체 없이 환경오염에 따른 위해를 해소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오염의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업체 및 주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함	환경보호부서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신고 관련 규정 위반	유독물 수입시 신고의무 미이행	<중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유독화학품리스트> 중 화학품 수출입 시, 국가환경보호국에 유독화학품수입환경관리등기신청을 진행해야 함	환경보호부서

자료원: 법무법인 태평양

<부록 3> 환경단속 사례

동 조사는 코트라 중국지역 13개 무역관에서 9. 8~ 9. 21 까지 현지에서 조사한 자료로 중국 로컬기업 8개사, 한국기업 11개사, 외자기업 2개사 등 총 21개사 사례를 수록함

1) 중국 로컬기업

상하이 창주콘크리트사(上海长久混凝土制品有限公司)/오폐수 불법 배출

- (소재지) 상하이시 충밍현(崇明)
- (설립연도) 2010년
- (생산품목) 콘크리트 제품 제작 및 판매, 건축재료, 금속재료, 강재, 동력전기설비, 계측장비 등 판매
- (조사 및 처분내용)
 - 《상하이시 환경보호조례》는 땅속에 스며들도록 만든 웅덩이나 빗물 배출구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영자는 벌금 처벌을 받고 시정 명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시정명령 당일부터 벌금을 일수대로 계산하여 처벌받음(按日连续处罚)
 - . 해당 업체는 빗물 배출구로 오수를 배출했으며, 환경보호부처로부터 12만 위안의 벌금을 처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아 미시정 일수별로 누적하여 징수함
 - 또한 《건설항목 환경보호관리 조례》도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음
 - . 해당 건설항목에는 환경보호시설이 구축되지 않았고, 미검수 혹은 검수 불합격에도 생산을 개시하는 등 위법행위가 드러남
 - 이에 환경보호부처는 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고, 시정하지 않아 '按日连续处罚'를 받음
- (대응조치)
 - 오수 처리설비를 구축하여 오폐수 배출을 상하이시 위원회에서 규정한 PH 6~9를 준수함
 - 환경보호국이 발간한《생산정지 명령 결정서(责令停止生产决定书)》에 따라 오염물 배출기준을 준수하여 지역의 생태환경 보호에 노력한다는 태도를 보여줌

□ 랴오닝성진청제지(辽宁省锦州市金城造纸股份有限公司)/오폐수 불법 배출

- (소재지) 랴오닝성(辽宁省) 진저우시(锦州市)
- (설립연도) 1939년
- (생산품목) 제지
- (조사 및 처분내용)
 - 폐수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 해당 회사는 폐수 방지시설 미가동 상태에서 폐수를 불법 처리
 - 배출된 폐수에 대해 검사 결과, COD는 기준치의 13.14배, 부유물질량은 기준치의 0.7배, 비소는 기준치의 0.1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진저우시환경보호국(锦州市环境保护局)은 생산정지 처분, 16만 위안의 벌금 부과. 2명의 담당자에 대해 5일간 행정구류처벌을 내림
- (대응조치)
 - 체계적인 오염물질 관리방안 수립

□ 저장성 윈링저귀단야오수처리장(温岭市泽国丹崖污水处理厂)/오폐수 배출 지표 미달

- (소재지) 저장성 윈링시(温岭市泽国镇东河路81号)
- (설립연도) 2012년
- (영업업종) 오수처리
- (질강성 환경국 공시 내용)
 - '17년 3.3일 윈링시 환경국에서 기한 내 정비토록 통지,공시
- (대응조치)
 - 폐수처리 설비를 갖춰 배출물 지표 달성 노력
 - 4.10일에 배출 기준에 달하여 환경국에 보고함

□ 우한강철코크스유한공사(武汉钢铁焦化有限公司)/ 폐기가스 불법 배출

- (소재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
- (생산품목) 코크스, 코크스석탄가스
- (조사내용)
 - 2016년 12.3일, 7일 우한시 환경감시센터 폐기가스, 폐수 배출 검사 진행, 검사 결과 질소산화물과 벤조피렌 배출 한도 초과
 - 12.8일, 16일 우한시 환경보호국 불법행위 관련 즉시 시정 명령 하달
 - 12.20일 우한시 환경보호국 재점검 결과 폐수/폐기가스 여전히 기준 초과
- (처분내용 및 대응조치)
 - 우한시 환경보호국, '16년 12.8일부터 20일까지 총 12일간 위법적인 폐기가스 배출에 240만 위안 벌금 부과
 - '16년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일간 위법적인 폐수 배출에 대해 180만 위안 벌금 부과
 - 동사 벌금 처분 접수 후 폐수, 폐기가스 배출시정조치

□ 산시사이더환경기술(陕西赛德环境技术发展有限公司)/폐기가스 처리시설 미비

- (소재지) 산시성 시안(陕西省 西安)
- (설립연도) 2001년
- (생산업종) 화학 공업 제품(위험 품 제외)의 개발, 생산과 유통,
- (조사내용)
 - 실시 단위: 시안 시 환경보호국(고릉 지국)
 - 위법 행위: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위반(폐기 가스 배출)
 - 규제 조치: <조사 봉인 방법(《查封扣押办法》)>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업체를 조사하여 봉인하고 차압함
 - 처벌 기간: '17. 4.24~ '17.5.24
- (대응조치)
 -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문제를 재검토하고 해결책 구함
 - 폐기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 전문적 폐기 처리 설비 구입하고 폐기 가스 처리 후 대기로 배출

□ 장쑤이저우재생(江苏亿洲再生资源科技有限公司)/폐기처리설비 비정상 가동

- (소재지) 장쑤성 련윈강시
- (설립연도) 2015년
- (생산품목) 니켈 합금 제조
- (조사내용)
 - '17년 4월 현지 환경당국 검사 시, 제조사 폐기처리 설비의 비정상 상태 가동 현장이 적발됨
 - 환경당국은 생산중지를 통보하고 벌금 100만 위안 부과
- (대응조치)
 - 생산 중지, 벌금 납부
 - 설비 검수하고 환보당국 허가를 받아 생산 재개

□ 하얼빈제약(哈药集团制药总厂)/탈질시설 미설치

- (소재지) 헤이룽장성(黑龙江省) 하얼빈시(哈尔滨市)
- (설립연도) 1958년
- (생산품목) 제약
- (조사 및 처분내용)
 - 탈질시설 미설치로 오염물질 과다 배출
 - 해당 공장은 6호 보일러에 탈질(脱硝)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단속을 걸림
 - 매연 농도는 배출허용 기준치의 2배, 이산화황 농도는 기준치의 0.4배, 질소산화물 농도는 기준치의 0.9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이에 하얼빈시환경보호국(哈尔滨市环境保护局)은 한 달 동안 생산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대응조치)
 - 오염물질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저감 설비 도입, 오염물질 관리 방안 수립 등 조치를 취함

□ 시안자위안재생공사(西安佳源通再生资源有限公司)/오염방지 시설 미비

- (소재지) 산시성 시안(陕西省 西安市)
- (설립연도) 2015년
- (생산품목) 비금속 류 재생 자원의 회수 및 유통,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가공
- (조사 및 처분내용)
 - 실시 단위: 시안 시 환경보호국(장안 지국)
 - 위법 행위: '3 동시 제도'위반
 - . '15년 1.1일부터 실시 시작한 <환경보호법>제41조 규정에 의거, 프로젝트 건설 과정 중에, 오염 방지 시설을 본 프로젝트와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운영을 해야 함
 - 규제 조치: <조사 봉인 방법(《查封扣押办法》)>제4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업체를 조사하여 봉인하고 차압함(생산 중지)
 - 처벌 기간: '17.4.11~5.11
- (대응조치)
 - 차압당한 설비 전원(设备电源)을 재검측 및 수리함
 - 오염방지 시설 구축
- (비고)
 - 중국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환경규제 강화와 각종 환경보호법 시행 등 정책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숙지하며, 개별기업의 산업분야별 정책사항을 확인하여 중국정부의 환경 검사 조사에 상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환경조사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는 (1)환경보호 책임자와 인원을 명확히 배치 (2)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진행하되, 모니터링 설비는 중국의 인증 및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함 (3) 설비를 운행하여 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환경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4) 환경보호부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 (5) 환경보호서비스 전문 업체의 위탁하여 환경관리를 강화함

2) 한국 투자기업

□ 난징 K사 : 폐기가스 처리시설 미비

- (소재지) 장쑤성 난징시
- (설립연도) 2006년 10월
- (생산품목) 화공제조업(PPG, PO, CS)
- (환경부문 피 조사내역)
 - 폐수, VENT GAS 등 생산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로 현재 장쑤성 환경보호국에서 화공원구 입주기업 대상으로 실시 중
 - * 규제사항 : ① 폐수배출량 감소(총 배출량의 10%)
② 생산시 발생하는 VENT GAS 처리 설비 설치
- (대응조치)
 - 폐수 회수 재처리 설비를 갖추 발생 폐수량의 20%를 감소함
 - '17년 초 원료 가공시 발생하는 분진 및 GAS를 모아 소각하는 설비를 1차적으로 설치함
 - '17년 말까지 생산설비에서 발생하는 VENT GAS를 모아 소각하는 RTO 설비 설치 계획

□ 광저우 B사

- (설립연도) 2000년
- (생산품목) 스티로폼
- (조사 및 처분내용)
 - 동사는 '16년 12.29일 광저우시 난샤구(南沙區) 수자원보호국으로부터 《위법행위 개정명령 결정서(責令改正違法行爲決定書)》를 받음
 - '17년 1.9일 현지 정부는 동사의 배수구에서 배출 폐수에 대한 샘플 재조사를 진행. 여전히 《수질오염물질 배출한계》를 초과해 총 5만 2382위안의 벌금을 납부
- (비고)
 - 동사는 2016년 말 첫 적발 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개선작업 없이 정상영업을 계속함. 그러나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조사가 진행됐고, 여전히 기준에 미달해 시정명령발급일로부터 일할 계산된 벌금을 납부하게 됨

□ 칭다오 H전자 /오폐수 불법 배출

- (소재지) 칭다오시 청양구
- (설립연도) 2002년
- (생산품목) 유색금속 복합재, 신형 합금재, 신형 전자부품 제조.
- (조사내용)
 - 환경영향평가 구비여부, 공업폐수 처리절차, 공장매연 처리절차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환경문제에 대한 전면검사
 - 환경보호국에서 회사 설립시 환경영향평가 구비 여부 및 공업폐수가 공장내 오수폐기장치를 통해 지정된 도시오수관망으로 배출되는지 여부 . 제품 표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매연의 처리방식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전면검사를 진행하였고 '17년 9.7일 저녁 현장에서 대외 배출 오수에 대한 샘플검사를 하였음. 검사결과 수치가 기준치에 부합
- (대응조치)
 - 환경 규제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업은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여 공업폐수, 공장매연 등 처리에 있어서 엄격히 법 규정에 의해 집행하였음
 - 정책시행 후 환경당국의 검사에 적극 협조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환경문제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마련하여 검사에서 큰 피해없이 무사히 통과

□ 칭다오 A레저용품/매연 처리시설 미비

- (소재지) 칭다오 자오저우시
- (설립연도) 2003년
- (생산품목) 텐트 생산, 판매 및 임대
- (조사 및 처분내용)
 - 환경당국에서 외부 검측기관에 회사의 매연배출에 대한 샘플감정을 의뢰하였으며 검측결과 국가기준에 부합이 되지만 매연을 임의로 배출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배출매연에 대한 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임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폐수처리가 법적 절차에 부합되며 배출폐수의 샘플검측 결과 국가기준에 부합됨
 - 조사결과 환경당국에서 매연처리 시설을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 내 설치할 것을 명령하고 벌금 4만 위안을 부과함
- (대응조치)
 - 청결생산요구 조건에 부합되도록 기한 내 폐기처리 시설 설치
 - 취급품목과 관련된 폐기, 폐수 배출 국가 및 지방 기준에 대해 상세히 체크
 - 생산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환경문제에 대해 재검토

□ 텐진 W전자/오염방지 시설 미비

- (소재지) 텐진시 북진구 따장관
- (설립연도) 2003년
- (생산품목) 사출성형: 건축자재, 농업자재
- (처분내용) 공장 일시 정지
- (대응조치) 집진 설비 설치 검토 중 (VOCs 집진기)
- (비고)
 -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제108조 규정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VOCs 포함한 폐기가스 유발활동은 금지됨. 텐진에서는 이미 VOCs 배출기준을 정해 비준 통보를 완료함. 시정명령을 어길 시 2만~20만 위안 벌금 및 시정 거부시 영업중지됨
 - 텐진시는 징진지 및 주변도시 연합대기오염처리방침에 따라 76개 기업이 VOCs 관리 대상 기업임. 현재 단속 강화로 자동차제조업의 사출, 도장 부분의 VOCs방지시설 설치 위반여부 단속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4단계) 흡입→이송→정제(흡착,소각등)→배출처리, 전문업체 선정(가급적 정부추천) 및 기준 이내 배출을 담보로 계약할 필요가 있음

□ 난징 A 반도체/폐기가스 처리시설 미비

- (소재지) 장쑤성 난징시
- (설립연도) 2007년 10월
 - (생산품목) 반도체칩
- (조사내용)
 - VOC 규제가 강화되어 난징시 환경보호국은 '15년 7월 실제 배출 농도와 관계없이 일부 소량만 사용해도 무조건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하였으며, 실행하지 않을 경우 조업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권고
- (대응조치)
 - 정부의 행정권고에 따라 '15년 8월 세정탑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 텐진 Y사/오염방지설비 비정상적 가동

- (소재지) 텐진시 진남구
- (설립연도) 2015년
- (생산품목) 전자부품
- (조사내용)
 - 17.8.10 현장검증 실시 후, 8.11 추가 심문 조사 진행
 - 검증 당시, 작업장에 15대의 사출기가 가동 중이었으나 VOCs 처리 시설 및 환풍기 모두 정지 상태였음
 - 이를 근거로 환경당국은 위 기업이 오염 방지 설비의 비정상적인 가동을 통해 폐기물을 불법 배출시킨다고 주장
 - 공장 가동 중지 15일, 벌금 40만 위안, 구류 행정처리 시행
- (대응조치)
 - 현장검증은 야간에 불시점검으로 이루어짐. 퇴근 후 잔업으로 야간근무시 총 15대 VOC 기계 중 하나가 터져 수리하느라 장비를 끈 상태였음. 다만 근로자가 수리 이후 장비를 켜지 않아 때마침 적발됨
 - 이에 기업은 관련 자료 증빙서류 제출과 함께 공장 가동 중지 15일, 벌금 40만 위안 등의 행정처리를 받음
 - 내년 말까지 추가 환보설비를 갖출 계획이며, 개발구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 개발구 임대료가 60~70% 올라 쉽지 않은 상황임
- (비고)
 - 중국 환경당국은 품목별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닌 모든 품목을 동일한 조건에 맞춰 규제하므로 기업들의 불만이 큼

- 또한 환경 규제 조치시 복잡한 행정처리로 벌금을 내고 공장 재가동 신청까지 예정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됨
-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개발구로 공장 이전하려는 기업 수요가 높아지면서 임대료도 지속 상승하는 추세임

□ 텐진 H선로반유공사/추가 환경영향평가 누락

- (소재지) 텐진
- (설립연도) 1994년
- (생산품목) FPCB
- (조사내용) 수시조사 진행. 조사 시 일부 설비 가동 중단
- (대응조치) 환경평가 초과 설비에 대한 추가 환경평가 추진
- (비고)
 - 환경영향평가는 제품이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설비가 새로 추가되거나 지역 이전시 재환경평가를 받아야 함
 - 환경영향평가지 행정기관 심사비준 의견을 철저히 이행하고, 심사비준없이 가동시 선 가동중지조치, 엄중시 원상회복, 공안으로 이송처리(엄중한 경우 3~7년 징역)됨을 주의해야함

□ 텐진 B전자/지역행사 개최를 이유로 생산중지 명령

- (소재지) 텐진
- (설립연도) 2004년
- (생산품목) 전자부품, 트랜스(Trans)
- (처분내용)
 - 17.8.21 텐진 전국체육대전(全运会)에 따른 생산중지 명령
 - 17.8.28 전기선 절단
- (대응조치) 개발구(동려구)로 이전 후 공장 가동
- (비고)
 - '17~'18년 동절기 특별감찰과 전국체육대전 시기가 겹치면서 단속이 더 강화되었음. 특별감찰은 정기감찰과 달리 최근 '오보법(五步法)' 5가지 방식으로 끝까지 추적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함
 - * 오보법(五步法) : 문제조사, 처리, 확인, 면담, 해당사항 전문감찰

□ **텐진 M테크 전자/환경 폐기물 적재장소 및 정리정돈 미흡**

- (소재지) 텐진시 동려경제개발구
- (설립연도) 2003년 5월 21일
- (생산품목) 자동차내장재(사출 도장 조립)
- (조사내용) 환경폐기물 적재장소 부적합
- (대응조치) 환경폐기물
- (비고)
 - 현재 텐진시 산란오(散乱污)기업 처리방향은 集中开展“小散乱污”企业专项整治的指导意见(2017.4)에 근거하여 산업정책부적합, 시 규획과 각종 무 인허가, 위법용지에 건설된 기업, 위법오염배출기업, 안전미흡기업 5가지에 해당되는 기업은 영업중지 대상임
 - 또한 환경보호 설비가 미흡하고, 생산시설이 낙후한 기업은 개조대상이며 정부심의 후 생산 재개 가능함. 환경당국의 단속 실시 심화에 따라 폐기물 장소 정리정돈까지 세심하게 신경쓸 필요 있음

□ **청두시 소재 한국 요식업계/대기오염 유발 연료 사용**

- (소재지) 쓰촨성 청두시
- (업종) 요식업(餐飲公司)
- (조사 및 처분내용)
 - 최근 시행된 청두시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650 공정(6대 행동, 50가지 조치)’ 및 治霾十条(스모그 퇴치를 위한 10가지 조치) 중 碳改电(숯불을 대체한 전기 및 가스레인지 사용 권장) 근거, 청두시내 요식업에서 숯불사용(炭) 금지에 대한 조치가 실시(숯의 경우 현지 꼬치류, 한국식 숯불구이 등이 메뉴인 현지 로컬 기업 및 한국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미침)
 - * 당국에 따르면 올해 총 432점을 단속하여 조리방식의 변경 후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 중 다수의 한국 요식업도 포함됨.
- (대응조치)
 - 대기 오염과 사실상 큰 관련성이 부족한 숯불 사용에 대한 제제 조치로 인해 숯을 대체하여 조리하고 있으나 맛과 홍보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임
 - 또한 한국 요식업 기업 운영과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중국 로컬 기업의 경우 여전히 숯불 등을 사용하여 조리하고 있어 현지 당국의 법 집행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비고)

- 한국 기업(요식업)이 동 법규 집행의 주요 타겟은 아니며 현지에 갈수록 심화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정부의 일련의 정책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한식당이 그동안 숯불을 사용하여 영업을 유지해 왔으나 향후에는 현지 법규에 근거한 전기 혹은 가스 등을 사용한 육류 조리가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강화된 현지 당국의 소방 및 안전 점검에 따라 조리시 환기 및 배기 또한 이웃 및 주거지의 영향이 없도록 사전 설계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오폐수 처리에 대해 철저히 현지 법규를 준수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함

3) 외자기업(싱가포르계)

□ Sateri화학섬유유한공사(Sateri化纤有限公司) / 불법 폐수 배출

- (소재지) 中国 장시성 九江市
- (생산품목) 천연섬유(물티슈, 마스크팩, 의류생산원료)
- (조사 및 처분내역)
 - '17년 4.27일 불법 폐수 배출로 신고접수, 환경보호청의 현장 조사 및 심문 조사 등 진행
 - 동 사의 폐수처리시스템 비정상 운영, 야간에 폐수를 장강(长江)으로 배출
 - 4.29일, 조업 중단 및 개선 명령
- (대응조치)
 - 4.29일 조업 중단과 함께 불법 배수관 폐쇄
 - 5.1일 전면 생산 중지
 - 5.2일 환경 보호 관련 개선 및 즉시 조치 약속
 - 5.5일 동사 임원과 부문매니저 10일의 구류처분
 - 환경보호부, 455.7억 위안 벌금 및 144억 위안 초과 배출 과징금 부과

□ 안후이 자통타이어(安徽佳通輪胎有限公司)/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 (소재지) 안후이성 허페이시
- (설립연도) 1993년
- (생산품목) 자동차 타이어, 기술검측 등
- (조사 및 처분내용)
 - 허페이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국은 기습점검, 야간점검, 수시점검 등 36회에 걸쳐 점검 진행
 - 조사 결과 배출 가스 기준치 초과로 시정명령과 함께 15만 위안의 벌금 및 3개월 생산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폐기처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7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음
- (비고)
 - '17년 8월 《안후이성 “13.5” 위험폐기물 오염예방 계획》을 발표 . 위험폐기물 처리 조치 중점항목 발전과 보장규획 관련 정책조치 명시
 - '13.5 계획'중 위험 폐기물의 원천관리 강화, 처리수준 제고, 감독관리 강화를 추진
 - '20년까지 안후이성 위험폐기물 생산 및 경영기업의 규범화 관리 및 샘플링검사 합격률 각각 90%, 95% 이상, 2. 성내 향급 이상 의료기구의 의료폐기물의 무해처리율 100% 달성



작성자

- ◆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박사
- ◆ 동북아사업단 정도숙 박사

감수자

-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정복영 환경관



KOCHI 자료 17-013

중국 환경 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 발행인 | 김재홍
- 발행처 | KOTRA
- 발행일 | 2017년 10월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 전화 | 02) 600-7119(대표)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문의처 | 중국사업단
(02-3460-7414)

ISBN : 979-11-6097-389-1(93320)
979-11-6097-390-7 (95320)(PDF)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중국 환경 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